

# 언론중재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 2015년 위원회 주요행사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프레스센터, 2015. 3. 2.]



정기총회[프레스센터, 2015. 3. 9.]



정기세미나[용평리조트, 2015. 8. 20. - 21.]



국정감사 수검(국회, 2015. 9. 18.)



정책토론회(국회, 2015. 10. 13.)



중재위원 연수(리솜스파캐슬, 2015. 11. 5. - 6.)

# 목 차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 제 1 부

### 총 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	13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	16

## 제 2 부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중재 .....	21
제1절 개 요 .....	21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21	2. 대량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2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	24
1. 청구현황 / 24	2. 청구권별 현황 / 24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 25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 26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 27	6. 중재부별 접수현황 / 28
7. 접수 유형별 청구현황 / 29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	30
1. 피해구제율 현황 / 31	2. 청구별 처리결과 / 32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 36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 37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38	6. 중재부별 처리결과 / 39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 40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	42
제5절 평가 .....	44
제2장   시정권고 .....	45
제1절 개 요 .....	4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46
1. 기사형 광고 심의 / 46	2. 시정권고 현황 / 47

3. 침해 유형별 분석 / 47	4. 매체 유형별 분석 / 52
제3절 평 가 .....	53
<b>  제3장   선거기사심의 .....</b>	<b>55</b>
제1절 개 요 .....	55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 55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 56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57
1.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 57	
2.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 60	
제3절 평 가 .....	61

### 제3부

##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b>  제1장   언론피해 상담 .....</b>	<b>65</b>
제1절 개 요 .....	6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66
1. 상담신청 유형 / 66	2. 상담 처리결과 / 67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 68	4. 상담매체 유형 / 68
5. 상담신청인 유형 / 69	6. 상담내용 유형 / 70
7. 복제기사 및 댓글 상담현황 / 70	
제3절 평 가 .....	71
<b>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b>	<b>72</b>
제1절 개 요 .....	7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73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 73	2. 분쟁해결 전문연수 / 74
3.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81	4. 교육콘텐츠 개발 / 82
제3절 평 가 .....	84

# 목 차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	86
제1절 개 요 .....	86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87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 87	2. 세미나·토론회 개최 / 91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 96	
제3절 평 가 .....	96
제4장   이용만족도조사 .....	98
제1절 개 요 .....	98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99
제3절 평 가 .....	101
제5장   흥 보 .....	103
제1절 개 요 .....	10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04
1. 블로그 개설 및 페이스북 개편 / 104	2. 홈페이지 개편 / 104
3. 대외홍보지 제작 / 105	4. 매체광고 / 106
5. 미디어 퍼블리시티 / 107	6. 위원회 사료의 디지털 전시 / 107
제3절 평 가 .....	108
제6장   기타 주요활동 .....	109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 109	2. 국제컨퍼런스 협력 / 110
3. 사회공헌 활동 / 112	4.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 / 112

제 4 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1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	117
1.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경과 / 117	2. 제안이유 / 120
3. 주요내용 / 120	4. 신·구조문 대비표 / 122
제2장   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 .....	128
1. 언론중재법 / 128	2. 공직선거법 / 131

제 5 부

**2016년도 업무계획**

제1장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	135
제2장   과제설정 배경 .....	136

**부 록**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 141	2. 설립근거 및 기능 / 151
3. 연 혁 / 151	4. 기 구 / 153
5. 2015년 예·결산 / 155	6. 2015년 국정감사 주요내용 / 155
7. 2015년 주요 발간물 목록 / 156	

# 표 목 차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표 1	대량사건 접수현황	22
표 2	대량사건 처리현황	23
표 3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4
표 4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5
표 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6
표 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7
표 7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8
표 8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9
표 9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30
표 10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30
표 11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32
표 12	청구별 처리결과	32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4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35
표 1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5
표 16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5
표 17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5
표 18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6
표 19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7
표 20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8
표 21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9
표 22	중재부별 처리결과	40
표 23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43
표 24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43
표 25	중재사건 처리결과	43
표 2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48
표 27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3
표 28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58
표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60
표 30	상담신청 유형	67
표 31	상담 처리결과	67
표 3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68
표 33	상담매체 유형	69
표 34	상담신청인 유형	69
표 35	상담내용 유형	70
표 36	상담대상 유형	71
표 37	2015년도 교육 실시현황	73

표 38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	74
표 39	신청인 및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	99
표 40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	100
표 41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	101

## 언론중재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제 1 부

총 론





## 제 1 장

#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위원회는 2015년 중점 추진과제로 다음 3가지를 설정, 추진하였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 과제를 설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언론조정의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조정실무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대량신청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언론피해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확대> 과제를 통해, 언론피해예방을 위한 매체별 기자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교육 인프라 개선 및 수요 확대를 계획하였다.

3가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

-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총 8차례의 내부토론회, 중재부장 간담회,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위법한 기사댓글 및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가 원스톱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인격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하여 언론법제 분야의 현안과 쟁점들에 관해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T/F팀을 운영하여 ‘뉴스미디어로서 SNS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기사 원스톱 피해구제방안’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 ■ 언론조정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손해배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손해배상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손해배상 유형별 주요 조정사례’와 함께 당사자에게 최적화된 조정안을 제공하고자 최근 3년간 합의문 1,000여 건을 분석하여 유형화한 ‘합의문 유형화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조정 사건처리 실무에 준용할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1,000건 이상의 조정을 신청한 대량사건의 신청현황 및 처리과정을 살피고 향후 대량사건 접수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담은 <대량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신임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량사건 처리 조정사례”를 비롯한 중재부별 조정사례 발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하여 중재위원의 조정실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관 주례회의, 조사관의 조정실무 관련 발제,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사관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였다.

### ■ 언론피해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확대

- 2015년도 언론인 대상 언론피해예방 교육횟수는 61회로 2014년도 29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신문과 관련하여 145개 매체의 기자 598명을 대상으로 언론인 워크숍 4회, 언론피해예방 교육 27회를 실시하였다.

-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월에는 부산사무소에, 5월에는 광주사무소에 교육 강의실을 신설하여 각각 15회, 16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 교육콘텐츠를 명예훼손, 초상권, 범죄보도, SNS 관련 분쟁, 협상 및 조정 등 세분화된 주제로 개발하였고, 현업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자주 갖는 질문을 취합하여 교육교재에 반영하였다. 또한, 교육용 사례 발굴 및 교육교재 구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전략회의’를 13회 가졌다.

## 제2장

#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안내문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건 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조정중재신청사건 처리과정의 실무를 반영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조정절차 안내문에 제척 및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해 기사형 광고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유관기관의 심의규정, 사례 등을 연구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교육실시 주기에 따라 연속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로 확대·개편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진로체험분야 자원으로 등재되었다.

- 핸드북 형태의 언론인 교육 교재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발간하고, 교육용 PPT로 일반인 및 대학생용, 초·중·고생용, 방송기자용, 홍보담당자용 등 신규 4종을 제작하였다.
- 성과지표 지수(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조사의 평균 점수)가 90.0점으로 2014년도 89.2점에 비해 0.8점 상승하였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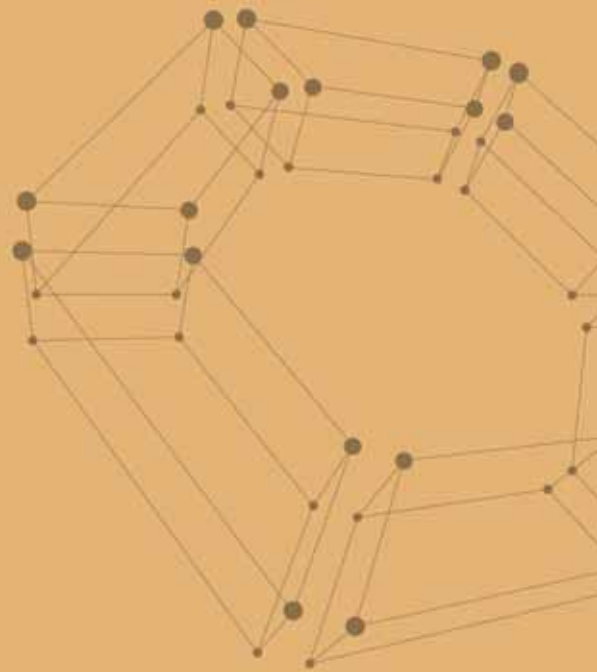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 제 2 부

#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 제 1 장

# 언론조정 · 중재

### 제 1 절 개요

####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보도뿐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매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보도 및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등(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현직 법관, 변호사, 교수,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각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피해구제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정절차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분쟁해결 절차로 평가된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에는 44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1,087건, 2010년 2,205건, 2015년에는 5,227건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아울러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외에 중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분쟁해결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없이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재는 양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 2. 대량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14년에는 개별 청구주체별 청구건수가 1,000건 이상 대량으로 신청한 사건(이하 '대량사건')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책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가 11,306건, 유 전 회장과 연관된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4,811건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015년에도 해당 대량사건 신청은 이어져 권윤자 씨가 1,210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698건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개년에 걸쳐 접수된 이들 대량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고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설립하여 교주로서 추앙받았으며, 도피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고 해외 망명을 시도하였다는 내용, 세월호 선장 및 직원 대부분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구원파로 불리게 된 것이 이단적인 교리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신청인은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표 1 | 대량사건 접수현황**

(2014. 1. 1. ~ 2015. 12. 31.)

연 도	신청인	청구명	접수건수	서울	지방
2014	권윤자	정정	9,006	8,780	226
		손배	2,300	2,239	61
	기독교복음침례회	정정	2,441	2,318	123
		손배	2,370	2,254	116
	소 계	정정	11,447	11,098	349
		손배	4,670	4,493	177
계		16,117	15,591	526	
2015	권윤자	정정	1,208	1,191	17
		손배	2	2	
	기독교복음침례회	정정	350	331	19
		손배	348	329	19
	소 계	정정	1,558	1,522	36
		손배	350	331	19
계		1,908	1,853	55	
총 계			18,025 (100)	17,444 (96.8)	581 (3.2)

\* ( ) 안의 숫자는 %

이러한 대량사건을 건별로 일일이 심리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는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매체별 전체 쟁점을 분류하여 재판 또는 검찰수사 결과 등에 따라 명확히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안은 정정보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은 반론보도, 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안은 추후보도, 지엽적이어서 당사자에게 실익이 없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 조율을 유도하였다.

이후 중재부는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중국에는 매체별로 일괄 합의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 전부를 취하하였다. 또한, 세월호 관련 보도 시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 및 전재한 다수의 매체들은 별도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우선 원 언론사와 신청인의 합의를 도출한 뒤 그 결과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개년간의 해당 대량사건 처리현황은 취하가 16,890건(93.7%)으로 거의 대부분이며, 조정불성립결정 859건(4.8%), 조정성립 256건(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 12건(0.1%), 기각 6건, 각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 대량사건 처리현황

(2014. 1. 1. ~ 2015. 12. 31.)

연 도	신청인	청구 건수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4	권윤자	11,306	90		348			10,868
	기독교복음 침례회	4,811	160	8	262	4		4,377
	소 계	16,117	250	8	610	4		15,245
2015	권윤자	1,210	2	2	127			1,079
	기독교복음 침례회	698	4	2	122	2	2	566
	소 계	1,908	6	4	249	2	2	1,645
총 계		18,025 (100)	256 (1.4)	12 (0.1)	859 (4.8)	6 (0.0)	2 (0.0)	16,890 (93.7)

\* ( ) 안의 숫자는 %

이러한 대량사건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증과 더불어 치열한 속보 경쟁으로 인해 사실 확인을 잘 하지 않거나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 또는 전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언론의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월호와 같은 재난·재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많은 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이번 대량사건의 처리 현황과 과정을 분석하여 대량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2015년에 작성, 이에 대비하였다.

한편,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하게 조정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를 대량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는 2015년 전체 처리사건 5,227건 중 대량사건은 1,908건으로 36.5%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특정 신청인에 의한 대량사건이 전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수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5,2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전체 청구건수는 2014년 대비 13,821건 감소하였지만, 이는 대량사건이 2014년 16,117건에서 2015년 1,908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하 '일반사건')은 2014년도(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위원회 일반사건 조정신청건수는 2010년 2,205건으로 처음 2,000건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 최근 5년간 조정청구현황

(2011. 1. 1. ~ 2015. 12. 31.)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청구건수	2,124	2,401	2,433	19,048	5,227
전년 대비 증감	-81	277	32	16,615	-13,821

### 2. 청구권별 현황

2015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098건(59.3%), 손해배상청구 1,560건(29.8%), 반론보도청구 419건(8.0%), 추후보도청구 150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67.7%)에 비해 8.4% 감

소하였지만, 3년간 평균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어 여전히 전체 청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 순위의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29.8%로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반론보도청구 비율은 2014년 대비 6.4%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대량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58건(81.7%), 손해배상청구 350건(18.3%)이었으며, 일반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40건(46.4%), 손해배상청구가 1,210건(36.5%), 반론보도청구가 419건(12.6%), 추후보도청구가 150건(4.5%) 순이었다.

표 4 |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청구명 \ 연도	2013	2014	2015	합 계
정 정	1,195 (49.1)	12,888 (67.7)	3,098 (59.3)	17,181 (64.3)
반 론	274 (11.3)	305 (1.6)	419 (8.0)	998 (3.7)
추 후	180 (7.4)	130 (0.7)	150 (2.9)	460 (1.7)
손 배	784 (32.2)	5,725 (30.1)	1,560 (29.8)	8,069 (30.2)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892건(17.1%), 인터넷뉴스서비스 799건(15.3%), 신문 757건(14.5%), 뉴스통신 264건(5.1%)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첫 해 48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가 2015년에는 2,49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는 모든 매체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724건(37.9%), 방송 477건(25.0%), 인터넷뉴스서비스 427건(22.4%), 일간신문 187건(9.8%), 뉴스통신 79건(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1,766건(53.2%), 일간신문 432건(13.0%), 방송 415건(12.5%), 인터넷뉴스서비스 372건(11.2%), 뉴스통신 185건(5.6%), 주간신문 133건(4.0%) 등이었다.

표 5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3	2014	2015	합 계
신 문	일간신문	380 (15.6)	1,378 (7.2)	619 (11.8)	2,377 (8.9)
	주간신문	142 (5.8)	139 (0.7)	138 (2.6)	419 (1.6)
방 송		288 (11.8)	3,776 (19.8)	892 (17.1)	4,956 (18.6)
잡 지		10 (0.4)	25 (0.1)	18 (0.3)	53 (0.2)
뉴스통신		112 (4.6)	1,117 (5.9)	264 (5.1)	1,493 (5.6)
인터넷신문		1,130 (46.4)	8,436 (44.3)	2,490 (47.6)	12,056 (45.1)
인터넷뉴스서비스		369 (15.2)	4,177 (21.9)	799 (15.3)	5,345 (20.0)
기 타		2 (0.1)		7 (0.1)	9 (0.0)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5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891건 (93.6%)으로 예년과 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초상권 침해 205건 (3.9%), 사생활 침해 56건(1.1%), 재산상 손해 51건(1.0%), 음성권 침해 14건 (0.3%), 성명권 침해 10건(0.2%) 순이었다.

대량사건은 1,908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반사건은 명예훼손 2,983건(89.9%), 초상권 침해 205건(6.2%), 사생활 침해 56건(1.7%), 재산상 손해 51건(1.5%), 음성권 침해 14건(0.4%), 성명권 침해 10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침해유형 \ 연 도	2013	2014	2015	합 계
명예훼손	2,252 (92.6)	18,793 (98.7)	4,891 (93.6)	25,936 (97.1)
초상권 침해	82 (3.4)	208 (1.1)	205 (3.9)	495 (1.9)
음성권 침해	5 (0.2)	5 (0.0)	14 (0.3)	24 (0.1)
성명권 침해	23 (0.9)	8 (0.0)	10 (0.2)	41 (0.2)
사생활 침해	45 (1.8)	14 (0.1)	56 (1.1)	115 (0.4)
재산상 손해	26 (1.1)	17 (0.1)	51 (1.0)	94 (0.4)
기 타		3 (0.0)		3 (0.0)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15년 조정청구현황을 신청인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청구가 3,123건(59.7%)으로, 전체 청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종교단체가 728건(13.9%)이었고, 일반단체 570건(10.9%), 기업체 379건(7.3%), 지자체 117건(2.2%), 언론사 87건(1.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청구건수에서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특히 종교단체의 청구가 많았던 2014년(26.0%)에 비하면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 1,908건은 개인이 1,210건(63.4%), 종교단체가 698건(36.6%)이었다. 일반사건은 개인 1,913건(57.6%), 일반단체 570건(17.2%), 기업체 379건(11.4%), 지자체 117건(3.5%), 언론사 87건(2.6%), 국가기관 85건(2.6%), 교육기관 84건(2.5%), 공공단체 54건(1.6%), 종교단체 30건(0.9%) 순으로 나타나, 전체 청구건수의 신청인 유형별 순위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7 |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신청인 \ 연도	2013	2014	2015	합계
개 인	1,395 (57.3)	13,021 (68.4)	3,123 (59.7)	17,539 (65.7)
국가기관	36 (1.5)	71 (0.4)	85 (1.6)	192 (0.7)
지 자 체	103 (4.2)	81 (0.4)	117 (2.2)	301 (1.1)
공공단체	85 (3.5)	103 (0.5)	54 (1.0)	242 (0.9)
일반단체	255 (10.5)	315 (1.7)	570 (10.9)	1,140 (4.3)
종교단체	31 (1.3)	4,954 (26.0)	728 (13.9)	5,713 (21.4)
기 업 체	383 (15.7)	331 (1.7)	379 (7.3)	1,093 (4.1)
언 론 사	64 (2.6)	90 (0.5)	87 (1.7)	241 (0.9)
교육기관	81 (3.3)	82 (0.4)	84 (1.6)	247 (0.9)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5년 조정청구건수 5,227건은 서울 8개 중재부가 4,225건(80.8%), 지역 10개 중재부가 1,002건(19.2%)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별로는 경기중재부 259건(5.0%), 광주중재부 214건(4.1%), 대전중재부 84건(1.6%) 등의 순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대량사건은 서울 소재 매체가 많은 관계로 1,908건 중 97.1%인 1,853건을 서울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하였다. 일반사건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서울 8개 중재부 2,372건(71.5%), 경기중재부 244건(7.4%), 광주중재부 214건(6.4%), 대전중재부 80건(2.4%) 순이었다.

표 8 |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중재부	2013	2014	2015	합 계
서울중재부	1,806 (74.2)	17,750 (93.2)	4,225 (80.8)	23,781 (89.0)
부산중재부	69 (2.8)	138 (0.7)	78 (1.5)	285 (1.1)
대구중재부	48 (2.0)	113 (0.6)	80 (1.5)	241 (0.9)
광주중재부	78 (3.2)	83 (0.4)	214 (4.1)	375 (1.4)
대전중재부	75 (3.1)	96 (0.5)	84 (1.6)	255 (1.0)
경기중재부	195 (8.0)	548 (2.9)	259 (5.0)	1,002 (3.8)
강원중재부	20 (0.8)	16 (0.1)	42 (0.8)	78 (0.3)
충북중재부	37 (1.5)	71 (0.4)	71 (1.4)	179 (0.7)
전북중재부	39 (1.6)	53 (0.3)	78 (1.5)	170 (0.6)
경남중재부	63 (2.6)	150 (0.8)	62 (1.2)	275 (1.0)
제주중재부	3 (0.1)	30 (0.2)	34 (0.7)	67 (0.3)
계	2,433 (100)	19,048 (100)	5,227 (100)	26,708 (100)

\* ( ) 안의 숫자는 %

## 7. 접수 유형별 청구현황

2015년도에 신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건 접수방법은 위원회의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인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인 것으로 나타났다(2,772건, 53.0%). 이는 대량사건 1,908건이 모두 전자문서를 통해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전자우편(E-메일)을 통한 접수가 1,913건(36.6%)이었으며, 방문 접수 409건(7.8%), 우편 접수 130건(2.5%) 등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예년과 같이 전자우편에 의한 조정신청 비율이 57.6%(1,913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언론중재 Eye-Net’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문서 접수는 26.0%(864건)로, 2014년 29.7%(870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9 |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청구건수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0)	2 (0.0)	5,227 (100)

\* ( ) 안의 숫자는 %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대량사건 1,908건을 포함한 총 5,227건의 2015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2,904건(55.6%),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기각 322건(6.2%), 직권조정결정 319건(6.1%), 각하 32건(0.6%) 순이었다.

특히 대량사건의 대부분(1,645건)이 취하로 처리되어 전체 사건에서 취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 피해구제율(88.7%)과 비교하여 10.8%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대량사건으로 인해 피해구제율이 예외적으로 높았던 것이며, 2015년 피해구제율은 2013년 77.6%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3,319건이 접수되어 2014년 대비 38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34건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취하된 1,259건 가운데 1,008건이 피해구제가 되었다.

**표 10 |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	37.6	2.2	2.3	12.1	0.8	0.1	44.8	

연 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의	이의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	6.1	0.7	0.6	5.8	0.6	0.4	85.8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circ \text{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 1.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요건이 적합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등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5년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 피해구제율(88.7%)에 비해 10.8%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2014년 대비 대량사건 청구건수 감소 및 대량사건 피해구제율의 하락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는 전체사건(19,048건)에서 84.6%를 차지하였던 대량사건(16,117건)이 높은 피해구제율(92.1%)을 기록하였기에 2014년 전체사건의 피해구제율(88.7%)도 과거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체사건(5,227건) 중 대량사건(1,908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이 대량사건들의 피해구제율(85.9%) 또한 2014년의 대량사건 피해구제율에 비해 다소 낮아 2015년 전체사건의 피해구제율 역시 2014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2015년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피해구제율(77.6%)과 비슷한 수치이다.

**표 11 |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3		2,433	22	2,411	1,870	77.6%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2015		5,227	354	4,873	3,797	77.9%

## 2. 청구별 처리결과

### 가. 개요

각 청구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2%,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17.2%로, 2014년(정정보도청구 4.9%, 반론보도청구 35.4%, 추후보도청구 22.3%, 손해배상청구 6.9%)과 비교해 정정보도청구의 조정성립률은 10.3% 상승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량사건이 없었던 2013년 42.8%에 비하면 약 1/3에 불과한 수준인데,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대량사건 대부분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2015년 일반사건 3,319건의 청구별 조정성립률은 정정보도청구 30.3%,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22.1%로 2014년 일반사건 2,931건의 조정성립률(정정보도청구 33.2%, 반론보도청구 35.4%, 추후보도청구 22.3%, 손해배상청구 27.5%)과 비교해 볼 때, 반론보도청구는 4.7% 상승한 반면, 정정보도청구는 2.9%, 손해배상청구는 5.4%, 추후보도청구는 0.3% 각 하락하였다.

**표 12 | 청구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정 정	3,098 (100)	470 (15.2)	136 (4.4)	420 (13.6)	63 (2.0)	17 (0.5)	1,992 (64.3)
반 론	419 (100)	168 (40.1)	35 (8.4)	44 (10.5)	37 (8.8)	3 (0.7)	132 (31.5)
추 후	150 (100)	33 (22.0)	15 (10.0)	1 (0.7)	12 (8.0)	1 (0.7)	88 (58.7)
손 배	1,560 (100)	269 (17.2)	133 (8.5)	245 (15.7)	210 (13.5)	11 (0.7)	692 (44.4)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사례 | 정정보도

A언론사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로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 학력과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들의 요구에 따라 연출된 것인데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 반론보도

B언론사는 서울의 한 구치소 관계자가 수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형집행이 이뤄져야할 교정시설 내에서도 재산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사례 | 추후보도

C언론사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의 신체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 손해배상 1

D방송사는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드러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사례 | 손해배상 2

E언론사는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방송에서 신청인의 실명과 나이가 명시된 판결문을 노출시켰다. 이에 신청인은 성명권이 침해되었고 해당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 1) 처리현황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17.2%, 직권조정결정 8.5%, 조정불성립결정 15.7%, 기각 13.5%, 취하 44.4%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 비율은 2014년 6.9%에 비해 10.3% 상승하였으나, 대량사건이 없었던 2013년 32.9%에 비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2015년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만을 본다면 손해배상청구 1,210건 가운데 조정성립 267건(22.1%), 직권조정결정 132건(10.9%), 조정불성립결정 182건(15.0%), 기각 209건(17.3%), 취하 409건(33.8%)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2014년 일반사건 조정성립률 27.5%에 비해 5.4% 하락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만을 본다면 2014년 22.7%에 비해 7.7%나 감소하였다.

표 13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6] (15.4)	6 (0.8)		367[300] (46.8)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1] (0.9)	414[7] (7.2)	80 (1.4)	36 (0.6)	4,709[4350] (82.3)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612] (44.4)

\*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 안의 숫자는 %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담중재부를 운영하였고, 이와 함께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하였다. 비록 2015년 1월 손해배상 전담중재부를 지정 해제하였으나, 각 중재부는 그간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에서 축적하였던 처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2015년 손해배상청구 1,210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00건으로 8.3%에 불과하였다.

표 14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3	783	92	11.7%
2014	1,055	112	10.6%
2015	1,210	100	8.3%

\* 2014년, 2015년은 전체사건 중 대량사건을 제외함

##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2원, 최고 600억원, 평균 1억 2,958만원, 중앙액 2,000만원이었다. 반면 조정액은 최저 50만원, 최고 400만원이었으며, 평균 160만원, 중앙액 1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청구액의 중앙액은 최근 3년간 2,000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 단위 : 원)

연 도 \ 구 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표 16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 단위 : 원)

연 도 \ 구 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표 17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5. 1. 1. ~ 2015.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5	500,000	3,000,000	1,450,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27	500,000	4,000,000	1,572,000	1,0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4	500,000	3,000,000	1,750,000	1,750,000	
성명권 침해	1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사생활 침해	47	500,000	3,000,000	1,625,000	1,000,000	1,000,000
재산상 손해	6	2,000,000	3,000,000	2,333,000	2,000,000	2,000,000

###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년 전체 손해배상청구건수는 1,560건(100%)이며, 이를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65건(8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 200건(12.8%), 사생활 침해 53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은 취하가 652건(51.5%)으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 220건(17.4%), 조정불성립결정 218건(17.2%) 순이었으며, 초상권 침해 사건은 기각이 130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26건(13.0%), 조정성립 24건(12.0%)이었다. 반면 사생활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결정이 34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상 손해 사건은 조정성립이 11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대량사건 350건은 전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를 제외한 명예훼손 일반사건 915건(100%)에 한정할 경우, 취하 369건(40.3%), 조정성립 218건(23.8%), 조정불성립결정 155건(16.9%), 직권조정결정 84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하
명예훼손	1,265 (100)	220 (17.4)	85 (6.7)	218 (17.2)	80 (6.3)	10 (0.8)	652 (51.5)
초상권 침해	200 (100)	24 (12.0)	9 (4.5)	10 (5.0)	130 (65.0)	1 (0.5)	26 (13.0)
음성권 침해	14 (100)	7 (50.0)	2 (14.3)				5 (35.7)
성명권 침해	7 (100)	3 (42.9)					4 (57.1)
사생활 침해	53 (100)	4 (7.5)	34 (64.2)	14 (26.4)			1 (1.9)
재산상 손해	21 (100)	11 (52.4)	3 (14.3)	3 (14.3)			4 (19.0)
계	1,560 (100)	269 (17.2)	133 (8.5)	245 (15.7)	210 (13.5)	11 (0.7)	692 (44.4)

\* ( ) 안의 숫자는 %

### 3.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로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잡지 61.1%, 주간신문 35.5%, 일간신문 28.1%, 인터넷신문 19.4%, 뉴스통신 17.0%, 방송 13.0%, 인터넷뉴스서비스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주간신문 26.1%, 일간신문 22.9%, 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각 12.4%, 인터넷신문 12.3%, 뉴스통신 6.1% 순이었다.

대량사건 외 일반사건만을 살펴보면 각 매체별 조정성립률은 잡지 77.8%, 일간신문 40.3%, 주간신문 36.1%, 방송 28.0%, 인터넷신문 27.2%, 뉴스통신 24.3%, 인터넷뉴스서비스 16.9% 순으로 나타나,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방송의 조정성립률이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각 11.8%, 14.0%로 일간신문 17.1%, 주간신문 27.1%, 방송 1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19 |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신 문	일간신문	619 (100)	174 (28.1)	32 (5.2)	142 (22.9)	10 (1.6)	2 (0.3)	259 (41.8)
	주간신문	138 (100)	49 (35.5)	29 (21.0)	36 (26.1)	1 (0.7)	2 (1.4)	21 (15.2)
방 송		892 (100)	116 (13.0)	42 (4.7)	111 (12.4)	72 (8.1)	5 (0.6)	546 (61.2)
잡 지		18 (100)	11 (61.1)	2 (11.1)			2 (11.1)	3 (16.7)
뉴스통신		264 (100)	45 (17.0)	14 (5.3)	16 (6.1)	21 (8.0)		168 (63.6)
인터넷신문		2,490 (100)	482 (19.4)	146 (5.9)	306 (12.3)	108 (4.3)	21 (0.8)	1,427 (57.3)
인터넷 뉴스서비스		799 (100)	63 (7.9)	53 (6.6)	99 (12.4)	110 (13.8)		474 (59.3)
기타		7 (100)		1 (14.3)				6 (85.7)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4.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4,891건으로 전체 5,227건(100%)의 93.6%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2,852건이 취하되었고 866건이 조정성립되었다. 2015년 대량사건 1,908건은 전부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이를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100%) 중 명예훼손 사건은 2,983건(89.9%), 초상권 침해 사건 205건(6.2%),

사생활 침해 사건 56건(1.7%), 재산상 손해 사건 51건(1.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의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한 조정신청 사건이 가장 높은 60.8%, 음성권 침해 50.0%, 성명권 침해 40.0%, 명예훼손 28.8%, 사생활 침해 12.5%, 초상권 침해 12.2% 등의 순이었고,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사생활 침해 25.0%, 명예훼손 14.5%, 재산상 손해 5.9%, 초상권 침해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4,891 (100)	866 (17.7)	268 (5.5)	683 (14.0)	191 (3.9)	31 (0.6)	2,852 (58.3)
초상권 침해	205 (100)	25 (12.2)	11 (5.4)	10 (4.9)	130 (63.4)	1 (0.5)	28 (13.7)
음성권 침해	14 (100)	7 (50.0)	2 (14.3)				5 (35.7)
성명권 침해	10 (100)	4 (40.0)					6 (60.0)
사생활 침해	56 (100)	7 (12.5)	34 (60.7)	14 (25.0)			1 (1.8)
재산상 손해	51 (100)	31 (60.8)	4 (7.8)	3 (5.9)	1 (2.0)		12 (23.5)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사례 |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손해**

F언론사는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명칭과 호수 등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오피스텔 임대가 되지 않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5년 신청인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227건(100%) 중 개인 3,123건(59.7%), 종교단체 728건(13.9%), 일반단체 570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15.2%였던 반면, 종교단체 사건은 취하 비율이 79.0%, 조정성립률은 2.1%에 불과하였다. 일반단체 사건은 취하 47.7%, 조정성립률 28.4%를 기록하였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100%)의 신청 현황은 개인 1,913건(57.6%), 일반단체 570건(17.2%), 기업체 379건(11.4%), 지자체 117건(3.5%), 언론사 87건(2.6%)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24.8%였다. 종교단체의 경우 취하 및 조정불성립 비율이 각 30.0%를 차지하였고, 조정성립률은 36.7%를 보였다.

표 21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신청인 유형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인	3,123 (100)	476 (15.2)	170 (5.4)	369 (11.8)	295 (9.4)	27 (0.9)	1,786 (57.2)
국가기관	85 (100)	47 (55.3)	15 (17.6)	4 (4.7)	1 (1.2)		18 (21.2)
지자체	117 (100)	37 (31.6)	16 (13.7)	23 (19.7)			41 (35.0)
공공단체	54 (100)	18 (33.3)	15 (27.8)	2 (3.7)			19 (35.2)
일반단체	570 (100)	162 (28.4)	52 (9.1)	66 (11.6)	16 (2.8)	2 (0.4)	272 (47.7)
종교단체	728 (100)	15 (2.1)	3 (0.4)	131 (18.0)	2 (0.3)	2 (0.3)	575 (79.0)
기업체	379 (100)	121 (31.9)	20 (5.3)	63 (16.6)	8 (2.1)	1 (0.3)	166 (43.8)
언론사	87 (100)	28 (32.2)	24 (27.6)	31 (35.6)			4 (4.6)
교육기관	84 (100)	36 (42.9)	4 (4.8)	21 (25.0)			23 (27.4)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6.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광주중재부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강원(42.9%), 충북(36.6%), 전북(35.9%), 경기(34.4%)중재부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재부의 경우, 대량사건 1,853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13.8%

이었으며, 이중 일반사건 2,372건의 조정성립률은 24.3%로 나타났다. 2014년 일반사건 조정성립률(28.0%)과 비교해서는 3.7% 하락하였다.

한편, 지역중재부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중재부는 259건을 처리한 경기중재부였으며 조정성립률은 34.4%였다.

**표 22 |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서울	4,225 (100)	582 (13.8)	263 (6.2)	583 (13.8)	307 (7.3)	17 (0.4)	2,473 (58.5)
부산	78 (100)	18 (23.1)		7 (9.0)			53 (67.9)
대구	80 (100)	17 (21.3)		15 (18.8)			48 (60.0)
광주	214 (100)	115 (53.7)	28 (13.1)		8 (3.7)	7 (3.3)	56 (26.2)
대전	84 (100)	25 (29.8)	2 (2.4)	4 (4.8)			53 (63.1)
경기	259 (100)	89 (34.4)	12 (4.6)	20 (7.7)	4 (1.5)	4 (1.5)	130 (50.2)
강원	42 (100)	18 (42.9)		4 (9.5)			20 (47.6)
충북	71 (100)	26 (36.6)		29 (40.8)		2 (2.8)	14 (19.7)
전북	78 (100)	28 (35.9)	6 (7.7)	8 (10.3)	2 (2.6)	2 (2.6)	32 (41.0)
경남	62 (100)	15 (24.2)		32 (51.6)	1 (1.6)		14 (22.6)
제주	34 (100)	7 (20.6)	8 (23.5)	8 (23.5)			11 (32.4)
계	5,227 (100)	940 (18.0)	319 (6.1)	710 (13.6)	322 (6.2)	32 (0.6)	2,904 (55.6)

\* ( ) 안의 숫자는 %

## 7.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2015년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신청되었으며, 특히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거나 댓글로 인한 피해호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러한 복제기사, 댓글 등에 대한 완전한 피해구제

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양 당사자 간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합의 의사가 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따라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아래 사례들은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며, 더욱 심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대부분이 위원회의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상 미비점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법률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의 심리 시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합의 및 결정 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률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1

**걸도는 육아병행 지원책... "기업문화 개선**



hp32\*\*\*\*  
갑자기 눈물난다. 저사진.. 젊은 엄마가 애기업고 직장구하려..  
원 6.25때 보도 사진을 연상케 한다. 아기 얼굴은 왜 모자이크  
좌진 것도 아닌데..이쁜 아기 얼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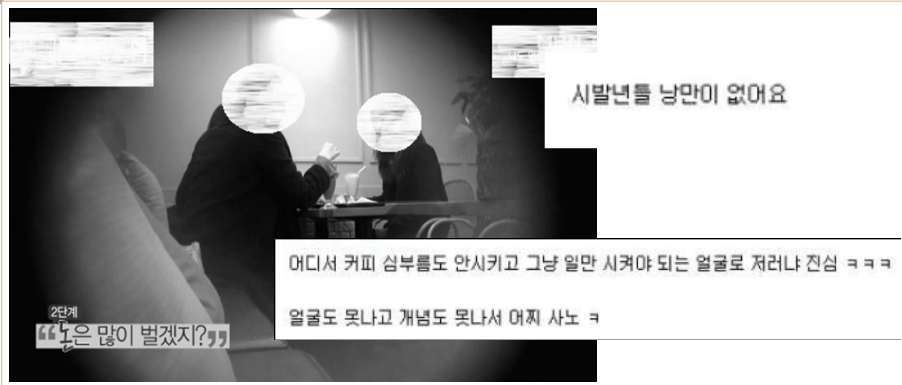
남편이란 작자가 업고 출근하지 그랬어. 와이프만 똥줄타냐. 동  
에 업혀있는 아가가 애처롭다. 아무때나 김치년거리지 좀 마라  
새끼야. 그럴수록 너 짜질한거 티나는거 모르냐.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렇게 한심한꼬라지로 살까?

워킹맘 엑스포'에 아이를 업고 온 여성이 채용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신청인은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원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였고, 특히 이를 매개한 포털에 악의적 댓글이 게재되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중재부는 원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 언론사는 포털 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라고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로 확정되었고, 포털은 원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였다.

## 사례 |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2



제작진의 연출에 따라 재연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고, 해당 화면이 복제기사로 무수히 전파되었다. 원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고, 신청인들이 복제기사 포털 URL을 제기할 경우 원 언론사가 게시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제4절 중재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중재제도 도입 이후 중재사건 청구현황은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으로 청구 자체가 미진하였다.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이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되면서, 위원회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으로 중재사건 청구현황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11건, 2015년 26건으로 최근 2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제도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나,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중재사건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비교적 적거나, 유사한 내용이 여러 인터넷 매체에 동시에 보도된 사안을 중심으로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26건 모두 명예훼손이었으며, 정정보도 11건(42.3%), 반론보도 7건(26.9%), 추후보도 6건(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은 인터넷신문 15건(57.7%), 신문·잡지 5건(19.2%), 방송 4건(15.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처리결과는 모두 중재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표 23 | 중재사건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15.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2015		명예훼손	26 (100)	11 (42.3)	7 (26.9)	6 (23.1)	2 (7.7)

\* ( ) 안의 숫자는 %

표 24 | 중재사건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5.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계	신문·잡지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2015		26 (100)	5 (19.2)	4 (15.4)	1 (3.8)	15 (57.7)	1 (3.8)

\* ( ) 안의 숫자는 %

표 25 | 중재사건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5		26	26				

## 사례 | 중재

A인터넷신문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불거진 2010년 7월 전후, B방송사 법무팀장과 감사팀장, 당시 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정권의 불법사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B방송사 노조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B방송사 주요 간부인 신청인들은 검찰 수사결과, 노조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청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A인터넷신문과 사전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하고 추후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B방송사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따른 노조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이 2015년 4월 16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A인터넷신문은 신청인들이 B방송사 불법사찰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당사자의 주장 및 혐의사항, 상호이익, 중재대상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결정을 하였다.

## 제5절 평 가

2015년 위원회는 총 5,2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대량사건 1,908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기준으로 보면 3,319건으로 2014년 일반사건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하였고 전체 조정신청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7.9%를 기록하였다. 2015년도 조정 및 중재제도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각각 84.1점, 78.1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그간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방안 마련, 포털전담 중재부 지정·운영, 2012년 손해배상 전담부 신설 등 조정업무의 일관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도 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 및 실질적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합의문 1천여 건을 분석해 청구권별로 조정성립된 사건의 유형을 구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안을 유형화하여 효율적인 조정심리 진행을 제고하였다. 또한, 조정과정에서 있었던 특이사례들을 별도 구분해 게재한 ‘합의문 유형화 보고서’를 작성, 이를 향후 유사한 사안의 조정심리에 참고하여 가장 최적화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포털 및 손해배상 사건 전담중재부 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해 2015년 1월 1일자로 지정을 해지하였으나, 그간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에서 축적하였던 처리 노하우를 전체 중재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주요 손해배상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손해배상 유형별 주요 조정사례’를 작성하였다.

또한,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복제기사의 전파나 기사덧글로 인한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끝으로 2015년도 직권조정결정 사건은 전체사건 5,227건 중에서는 319건(6.1%)이었고, 전체사건에서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 중에서는 315건(9.5%)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그간 참고인 심문에 관한 세칙, 증거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칙, 증거조사 활성화 관련 예규 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함께 직권조정결정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 2 장

# 시정권고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기사형 광고 심의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심의대상 전 매체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 유형, 지면, 광고 대상 상품 유형, 바이라인(기자명이 적시된 기사) 기재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대상 매체 중 기사형 광고는 총 3,329건이 확인되었으며, 일간지의 경우 주로 신제품 소개형태로 게재되고 있었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유통업체나 신상품 소개형 기사와 기존 상품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바이라인을 명시한 상태로 게재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관기관 심의규정과 사례, 외국의 법령과 기준 등을 참고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사형 광고’ 심의는 형식적 기준, 내용적 기준, 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명백한 사안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업종별 기준으로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 등이 있다. 특히,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기사형 광고’ 세부 심의기준 ]

1단계 형식적 기준	광고 미표시 광고성 기사와 바이라인 삽입 광고성 기사를 심의대상으로 함
2단계 내용적 기준	위의 기사 가운데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성 기사 2. 기만적인 광고성 기사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성 기사 4. 비방적인 표시·광고성 기사를 안건으로 채택함
3단계 업종별 기준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건을 채택함

2015년 한 해 총 95건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통신 15건, 중앙일간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 2.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300여 개 매체를 심의해 438건의 법의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준 강화, 여론조사 공표기준 개정, 기사형 광고 심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2015년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14년 302건에 비해 136건(45.0%) 늘어난 438건이다. 결정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사형 광고 위반으로 9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전년도 대비 67건, 마약 및 약물보도 위반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60건이 늘었다.

## 3. 침해 유형별 분석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및 약물보도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가 135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95건, 21.7%)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시정권고(92건, 2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살 관련 보도는 62건(14.2%), 범죄수법 상세묘사 16건(3.7%), 충격·혐오감 14건(3.2%)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규로 침해유형에 포함된 기사형 광고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마약 및 약물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16건이었던 건수가 2013년 89건, 2014년 7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5년 135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보도로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권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2015년 95건의 시정권고가 있었다. 언론사가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고 있고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도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항목을 신설하였다. 위원회는 관련 법 등을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표 26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침해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기타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기타	
2013	289 (100)	23 (8.0)	35 (12.1)	1 (0.3)		31 (10.7)	78 (27.0)	89 (30.8)	32 (11.1)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60 (19.9)	73 (24.2)	75 (24.8)	13 (4.3)		6 (2.0)	
2015	438 (100)	92 (21.0)	5 (1.1)	11 (2.5)		16 (3.7)	62 (14.2)	135 (30.8)	14 (3.2)	95 (21.7)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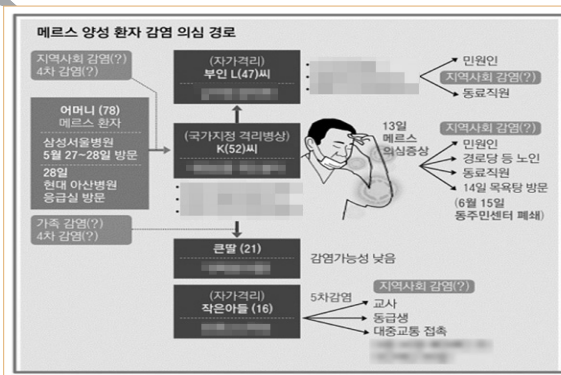
\* ( ) 안의 숫자는 %

### 가. 사생활 침해 등

위원회는 2014년 12월 인격영역의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인적 법익 침해 중 사생활 침해 등 건수는 2013년 23건, 2014년 25건이었으나 2015년 92건으로 급증하였다. 사생활 침해 등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해 촬영, 보도한 사례에 대해 대거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며, 일반인의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병실에 누워있는 대기업 회장과 사적 공간인 자택 내부에 있는 前 총리를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으며 메르스 확진 환자를 특정 한 사례도 있었다. 보도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를 다루었다고 할지라도 사적인 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인격권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례 | 사생활 침해



\*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나.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015년 한 해 동안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위반은 5건(1.1%)으로 2013년 35건, 2014년 16건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언론사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추어 피의자의 성·나이·근무지를 명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보도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였다. 다만, 흉악범이나 공개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 사례 | 피의자 신원공개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북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 ○○○○○○빌딩 ○층에 소재한 ○○○○클리닉 성형외과 (<http://www.○○○.net/○○○○의원>) 원장 ○○○(5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생략)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다. 범죄수법 상세묘사

범죄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기사에 대해서 총 16건의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2014년 60건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 사례 | 범죄수법 상세묘사

##### 신용카드 위조 1분이면 똑딱

(전략) ○○○를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하고 데이터 인코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준비는 거의 끝난 셈이다. 이제 신용카드 개인정보와 이를 덮어씌울 실물 카드만 있으면 1분도 안 걸려 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 (중략)

그렇다면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 역시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 판매 글은 대부분 e메일 주소가 달랐지만 인터넷전화 스카이프나 통합 커뮤니케이터 네이트온 아이디(ID)가 같은 것으로 봐서 동일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이나 중국 메신저 ○○(○○) 사용을 선호했다. 이렇게 수집한 e메일 주소로 구매를 의뢰하자 한 명으로부터 답이 왔다. ○○○는 사용법을 포함해 30만 원, 명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V(카드 보안 코드) 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건당 2만 원씩 25건 단위로 묶음 판매한다는 것. (이하 생략)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라. 자살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2013년 78건, 2014년 73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15년 62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직업과 근무지를 공개해 자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또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회적 공인이라고 보기 힘든 사인(私人)의 자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살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 신원을 공개하거나 자살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로 시정을 권고 받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일지라도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보도,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예방책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사례 |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 공개

(전략) 숨진 A씨는 키 185cm,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 부검 결과 사인(死因)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 간 등에서 검출된 ○○○ 성분. A씨의 혈중 ○○○ 농도는 L당 ○○mg에 달했다. 혈중 ○○○ 농도가 L당 0.○○mg 이하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0.○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씨는 치사량의 7배 가까운 ○○○에 중독됐던 셈이다.

A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과수는 “A씨가 병에 담긴 액상 ○○○을 마시고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생략)

\* ‘○’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사례 | 자살자 신원공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TB 투자증권 건물 15층에서 물류회사인 ○○○○ 직원 ○모씨(○○·○)가 투신했다. ○씨는 투신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 ‘○’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마.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마약류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2년 116건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 89건, 2014년 7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0건 늘어난 135건으로 급증하였다. 마약류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사건 수사 발표를 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되어 이를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 가격, 사용방법 및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례 |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전략) 신씨 부부 등 2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채팅앱 ‘○○’ 등에서 만나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씩 모여 서울 강남 등지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마약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아시는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이 연락해오면 다른 채팅앱 ‘○○○○’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을 팔거나 집단 성행위를 벌였다. 이들이 주고받은 필로폰의 양은 총 ○○g으로 1g당 ○○만~○○만원에 거래됐다. (이하 생략)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 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 바. 충격과 혐오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는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충격과 혐오감으로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14건으로 2014년 13건과 비슷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남성의 사진을 게재한 13개 언론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 사. 기사형 광고

위원회는 2014년 12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사형 광고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3월부터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95건이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는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형식적, 내용적, 업종별 기준을 충족한 명백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만 시정을 권고하였다. 업종별로 살펴

보면 기사 형태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 | 기사형 광고

**'지긋지긋했던 여드름... 72시간이면 잡는다'  
... [모자이크] 의원, 'PSM 스피클링'**

효과 빠른 여드름 치료 'PSM 스피클링' 필링 치료 도입

이정형 객원기자

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플립보드

자도파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들에게, '치료'는 먼 일이었다. 피부과 치료나 피부관리숍에서 케어를 받아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지긋지긋한 여드름은 끝없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염증으로 얼굴에 남아버린 흉터는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고민을 남기기도 했다.

한때 청춘의 상징으로, 쉬이 여겨졌던 여드름은 이제 본격적인 치료 대상으로 인식된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여드름 증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드름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잡아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법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드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이들에게도 속시원한 '해결법'이 등장한 것.



▲ 미미타임투의원의 의료진 사진 © 이정형 객원기자

\* 원 보도내용에는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어 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4. 매체 유형별 분석**

2015년 한 해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297건(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84건(19.2%), 뉴스통신 44건 (10.0%) 주간지 10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 간 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2013	289 (100)	29 (10.0)	44 (15.2)	2 (0.7)		27 (9.3)	187 (64.7)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 ( ) 안의 숫자는 %

2015년 인터넷신문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은 2014년 58.9%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 64.7%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를 차지할 만큼 매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법익 침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여전히 페이지뷰를 늘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부지급 기사도 많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과 언론 보도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기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전달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으며,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모니터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한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438건으로 전년 302건 대비 45.0%나 증가하였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침해 보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으며, 마약 관련 보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 심의대상에 포함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통해 9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반면 범죄수법 상세묘사 보도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피의자 신원 공개 보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 현황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존 재택 인터넷신문 모니터요원을 사무실 상주 시정권고 심의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많은 인터넷신문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정권고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수를 기존 1,000여 종에서 2,0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사회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제 3 장

# 선거기사심의

### 제 1 절 개 요

####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심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재보궐선거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는 공직선거법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리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아울

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적으로 재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선심위는 해당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 수준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 심의보조원 및 실무팀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하여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건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이행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

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2015년 4월 29일 치러진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서울 관악구을(국회의원), 강원 양구군(광역의원) 등 총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

국회의원(4)	서울 관악구을, 인천 서구·강화군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 중원구
광역의원(1)	강원 양구군
기초의원(7)	서울 성북구 아, 인천 강화군 나, 경기 광명시 라, 경기 의왕시 가, 경기 평택시 다, 전남 곡성군 가, 경북 고령군 나

선심위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기간(2015. 2. 28. ~ 2015. 5. 29.) 동안 자체심의 25건, 시정요구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주의가 18건(72.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와 권고가 각 3건(12.0%)이었으며, 정정보도문 등 게재가 1건(4.0%)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가 21건(8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건(8.0%),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과 기고 등 위반이 각 1건(4.0%)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2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10건(40.0%), 종합주간지 2건(8.0%), 뉴스통신 1건(4.0%)이다.

시정요구 2건은 공정성 및 형평성과 기고 등 위반이 각 1건이며,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 각 1개 매체에 대해 권고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표 28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5. 2. 28. ~ 2015. 5. 29.)

구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여론조사 보도요건	광고 제한	기고 등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신문	중앙	10			10				1	7	2
	지역	12	1	1	9	1			1	10	1
종합주간지		2	1		1			1		1	
지역주간지		0									
월간지		0									
뉴스통신		1			1				1		
계		25	2	1	21	0	1	0	3	18	3

사례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변희재, 애국진영 시민후보 공천 4.29 재보선 관악출에 출사표 던져**



**02 변희재 인미협 회장, 애국진영 후보로 4.29 재보선 관악출에 출사표 던져**

'애국진영 4.29 재보선 비상대책위원회' 10일 총회에서 추천

\* 미디어워치는 위 기사를 비롯하여 2015년 3월 18일자 및 4월 1일자에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알리고 이를 지지하는 기사, 후보자의 저작물 광고 등 총 7건의 기사를 게재함

사례 |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에 따른 경고결정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 위수)로부터 다음의 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알립니다.

2015년 3월18일자 1~2면 '변희재, 애국진영 시민후보 공천 4.29 재보선 관악출에 출사표 던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18일자 5면 "무소의 불처 럼 가라" 제하의 칼럼

2015년 4월1일자 1~2면 "관악을 맞추고 각자 이색 후보 '눈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1일자 2면 "편지일보, '변희재 할리우드 공인 자격 갖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1일자 3면 "변희재의 청춘 투쟁" 제하의 광고

2015년 4월1일자 5면 '변희재 예비후보의 완주와 당선을 기대한다' 제하의 칼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본지가 2015년 상반기 제·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알리는 기사, 후보자를 부각하는 기사, 후보자가 작성한 답사,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고, 후보자의 자서전 광고 등을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여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누락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동법 제93조(발행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13조(특정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123조(연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 후보자 시정요구(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어머니의 절규

4월재보궐선거 공식선거일이 시작된 4월16일에 한홍의 재보전 회를 받고 본지 기자는 그분을 만 나러 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주 앉 어서 정황을 들어보았다.  
그분은 2002년 김근에 위치한 \* 신동근 치과'를 찾아갔는데, 1시간 만을 기다려 진료를 받게되었다.  
6살짜리 큰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데, 기구를 이용해서 입을 벌리려고 하니 6살 된 아이는 아픔을 토로하고...그 당시 3살된 둘째 딸이 울어서 어머니 는 둘째 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 고 나가...  
'밖에 있는 분이게 잠시 말기고, 진료실이 들어있는 순간, 신동근

씨는 엄마가 없는 줄 알고 6살짜리 큰아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신동근 치과의사'를 보게된다. 한번 가슴을 내리치자 아이가 더 크게 울었고 또다시 팔에 힘을 실어 가슴을 힘껏 내리치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엄마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않 아 "왜왜 왜 아이를 때려요?"라고 하자 당황하며 얼굴 빨개지던 신동근 씨의 모습을... 엄마는 지금도 너무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치 '인간'에서 벌어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처럼...  
그순간 어머니는 '신동근 치과 의사'에게 항의를 하고, 나중에 한 어머니의 12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신동근 치과의사'는

3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 지고 만다.  
이번 4월재보궐선거...그리고 내년 2016년 총선에도 만약에 '신동근 치과의사'가 '국회의원'에 나오 면 그 어머니는 또다시 '신동근 낙 천운동'을 할 것이라곤 한다.  
그때 6살짜기 어린아이는 지금 은 21살이 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 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평생 그 충격속에서 살아갈것이다.  
어머니는 본지 기자에게 마지막 으로 한 말씀을 한다.  
"그때 당시 진심으로 그 엄마에게 '신동근 치과의사'가 자신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용서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인정할줄도 모르는 인면수심한 사 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은 아무나는 안뽑

니다. 정치는 그런 사람이 하면 세 나 소나 아무나 해도 괜찮다는 것 이었다. 적어도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본지 기자는 어머니와의 인터뷰 를 마치고...  
김근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서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환장중에 사는 주부인 김00씨는 그 사연을 안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김근에서 살면서 누 구에게 피해를 끼친적도 없고, 주 위 환경도 좋고...가치말을 하신분 도 아니고...또한 또한 그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는 자신 또한 '신동근' 씨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털 어놓는다.  
왕길동에 사는 68살 모씨는 이 00씨는 평상시에 그 "어머니"를 잘 알고...그 얘기를 듣고는 자신의 일 처를 분개하시며,노인정을 바꿀테

서 돌아다니며, 주위분들에게 '신 동근'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셨 다고 한다.  
낙선 운동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하여 증빙 서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오래되 어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닌 사건 번호로 되어있기때문에 찾기가 어 렵다고 했지만 담당 경찰에게 찾아 말라고 사정하여 그 당시 증명서류 는 인천 지방 경찰청에 공개정보청 구를 통해 결국 찾아 내었다...  
한 어머니의 "절규"...그것을 들 은 날이 바로 "세월호 1주기"가 벌 어진 4월16일이다.  
세월호 사건이 그 여인 아이들이 당한 그 사건처럼...  
한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사연 을 접하며, 이 사면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본 지 기자는 김근의 인터뷰를 마쳤다.

\* 지역주간지 강화섬소식은 4월 25일자 지면에 특정 후보가 과거 의사로 활동하던 시절 병원에서 미성년 자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반론 취재 없이 게재하였고, 후보자 측은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 하였으나 심의 결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결정되었음

사례 |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본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한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지는 4월 25일 '어머니의 절규'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서구 강화를 선거구에 출마한 신동근 후보자에 관하여, "엄마 가 없는 줄 알고 6살짜리 큰아들의 가슴을내리치는 "신동근 치과의사"를 보게 된다. 한번 가슴을내리치자 아이가 더 크 게 울었고 또다시 팔에 힘을 실어 가슴을 힘껏 내리치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이의의 어머니가 신 동근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동근 후보자측은 어린이가 치료 중 많이 움직이는 경우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고 치료를 진행 한 적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 도 취해진 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례 |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주의 결정)

與도 野도 텃밭 고전... 부동산 많아 변수

4·29 재보선 초반 판세

날짜 2016.04.29 14:00

4·29 재보선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 텃밭에서 고전하면서 비상이 걸렸 다. 예상보다 선전하는 새누리당도 연 방에서는 예외 없고 있다.  
총연말보 여론조사연구팀이 3일 공 개한 여론조사(3월31일, 지난 1일 600 명 대상)로 실시, 오차범위는 95%, 신 뢰수준 ±4%포인트(X)에 따르면 여당세 기 강한 서울 관악구에서 새누리당 오 신환 후보가 34.3%의 지지율로 새정치 연합 정태호 후보(15.9%)와 국민모임

관악을-경주 서울 새정치연합 뒤져 인천 서-강화율은 與후보와 결전 성남중원선 야권 표 분산 與 유리 기간 많이 남고 부동산 표심 변수  
경동영 후보(13.3%)를 앞도했다. 경주 서구울에서는 무소속 원형배 후보가 28.7%를 얻어 새정치연합 조영태 후보 (22.8%)를 앞섰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 는 9.6%였다. 이들 2곳에서 새정치연 합이 당초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평가 됐으나 야권 후보 난립으로 2위에 머물 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당 세가 강한 인천 서-강화 울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지 역적 기반이 탄탄한 새정치연합 신동 근 후보에게 격된 열세를 보여고 있 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가 안 후보보다 3%포인트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규 른 조사에서 몇 경기동부연합의 근거 지인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한 새누리 당 신상진 후보는 김피해 한 통합진보 당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따른 야권표 분산 효과에 힘입어 새정치연합 정영 세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린 것으로 판 해졌다.  
하지만 초반 판세와 달리 결과는 선

황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선거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야권 실패 부동산의 표심 등 변수가 많아서 다. 윤하영 오피스나연리야권 여론분석 센터장은 통화에서 "관악은 정동영 후보가 탈당의 명분을 알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배신 프레임을 견어내 느니, 야권 지지층이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 중 어느 인물의 경쟁력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한 후보가 지 명도에 비해 월등히 우세를 보이지 않는 곳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서원할 과 야권을 동시에 가진 유권자가 배 신 프레임에 걸린 한 후보자를 선뜻 지지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야권 지 지층의 적당 표출력이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가 관건 포인트가 될 것만 이다.

\* 세계일보에는 4월 4일자 지면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비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여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등을 위반하였음

## 2.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기초단체장), 서울 영등포구 제3(광역의원) 등 총 24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

기초단체장(1)	경남 고성군
광역의원(9)	서울 영등포구 제3, 부산 부산진구 제1, 부산 기장군 제1, 인천 부평구 제5, 인천 서구 제2, 경기 의정부시 제2, 경기 의정부시 제3, 경기 광명시 제1, 전남 함평군 제2
기초의원(14)	서울 양천구 가, 부산 서구 다, 부산 해운대구 다, 부산 사상구 다, 인천 남구 다, 인천 부평구 나, 울산 중구 나, 경기 김포시 나, 강원 홍천군 다, 충북 증평군 가, 전남 목포시 라, 전남 신안군 나, 경북 울진구 다, 경남 사천시 라

선심위는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기간(2015. 8. 29. ~ 2015. 11. 27.) 동안 자체심의 6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권고가 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가 1건(16.7%)이었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6건이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가 각 3건이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의결 건수가 타 재보궐선거에 비해 적은 이유는 2015년 7월 국회에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 시행 이전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지역에서만 선거가 치러져, 선거구가 줄어들고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9 |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15. 8. 29. ~ 2015. 11. 27.)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 별	계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보도요건	광고 제한	기고 등	사과문 게재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0									
	지역	3	3							1	2
종합주간지	0										
지역주간지	3	3									3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6	6	0	0	0	0	0	0	0	1	5

##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2파전’ 예고

새누리 김종혁-새정치 채신덕  
각각 당 경선서 최다 득표

현재 공식중인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김포1동·장기동)의 10월28일 재선거가 새누리당 김종혁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채신덕 후보의 2파전으로 치뤄질 전망이다.

권오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뤄지는 김포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는 지난 7일 나선거구 당원 483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4명에 대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240표(48%)로 최다 득표한 김종혁 후보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지역위원회는 20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나선거구 권리당원 87명 가운데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28표(56%)를 받은 채신덕 후보를 재선거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채 후보는 22표(44%)를 받은 서현석 예비후보 보다 6표를 더 얻었고 새정연 경기도당이 18일과 19일에 실시한 일반



김종혁



채신덕

주민 전화여론조사에서도 52.1%를 받아 47.9%의 서현석 후보를 앞섰다.

채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전화여론 조사의 합산 경선 결과 54.95%로 앞서 45.05%의 서현석 예비후보 보다 9.8%를 이겼다.

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새누리당 김포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재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직선거에 비중을 두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해서 종전의 시의원 5대5 황금비율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새정연 김포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재선거를 통해 의원 1명을 추가 당선시켜 시 집행부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종승기자

\* 중부일보는 9월 22일자 지면에서 2명의 후보 사진만을 게재하고 ‘2파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소속 후보 1명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였음

## 제3절 평 가

선심위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구 관련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일간지 및 지역주간지에 대해 교차 검토 등의 방법으로 집중 심의해 안건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25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최근 3년간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결 건수로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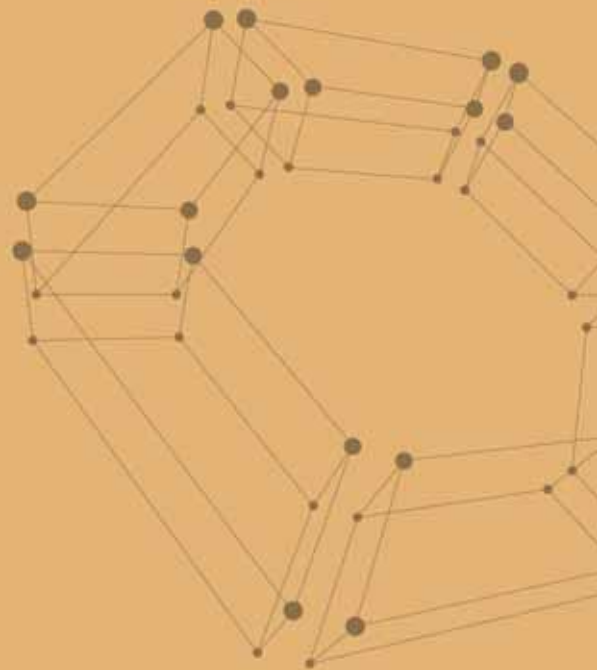
선심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을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2015년 9월 개정하였다. 하지만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개정 규정은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사과문 게재명령이 위헌(2013헌가8)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및 심의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개편하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선심위의 심의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3 부

#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 제 1 장

# 언론피해 상담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2004년부터 언론피해 상담을 시작한 이래 30,118건의 상담을 처리하면서 언론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전화, 방문을 비롯해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실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신청인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원회 피해구제절차로써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도 피해 유형에 적절한 타 기관을 안내하거나 관련 법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언론 보도의 피해가 포털 등의 매개기사, 복제기사, 댓글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상담 과정에서 파악하고, 조정심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신청서 작성 안내 내용을 개선하여 상담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작성 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도 실시한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상담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91.6점으로 2014년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최근 4년간 89점대이던 상담신청인의 종합만족도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90점을 상회한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상담신청인의 종합만족도를 볼 때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안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언론피해 상담 모습 ]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상담신청 유형

2015년 전체 상담건수는 2,545건으로 2014년 2,217건에 비해 328건(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한 상담이 2,117건(8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방문 190건(7.5%), 인터넷 실시간 상담 67건(2.6%), 인터넷 게시판 4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대인(對人) 상담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5년에는 기존에 한자리 수에 머물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담신청이 48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금년 7월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담신청이 더욱 용이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0 | 상담신청 유형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기타
2014	2,217 (100)	1,838 (82.9)	181 (8.2)	65 (2.9)	4 (0.2)	49 (2.2)	80 (3.6)
2015	2,545 (100)	2,117 (83.2)	190 (7.5)	67 (2.6)	48 (1.9)	35 (1.4)	88 (3.5)

\* ( ) 안의 숫자는 %

## 2. 상담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2,225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상담 예정 477건(14.5%), 타기관 안내 307건(9.3%), 법적절차 안내 140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로 ‘재상담 예정’이 2014년도에 비해 320건 증가하였다. 이는 상담원의 책임감 있는 사건 관리 및 이러한 상담 현황의 원활한 부서 내 공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담신청인이 최초로 대응한 상담원과 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상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타기관 안내’도 2014년에 비해 174건 증가하였는데, 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제 절차로 해결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해서도 적절한 타 기관을 안내하는 등 상담신청인에게 적극적인 상담 제공을 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표 31 | 상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처리결과 건수	상담 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2013	2,746	3,047 (100)	2,445 (80.2)	120 (3.9)	204 (6.7)	82 (2.7)	168 (5.5)	28 (0.9)
2014	2,217	2,605 (100)	2,049 (78.7)	188 (7.2)	157 (6.0)	133 (5.1)	64 (2.5)	14 (0.5)
2015	2,545	3,291 (100)	2,225 (67.6)	140 (4.3)	477 (14.5)	307 (9.3)	67 (2.0)	75 (2.3)

\* ( ) 안의 숫자는 %

\* 상담 처리결과는 복수의 처리결과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와의 합계가 불일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시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상담을 신청해 온 피해 유형으로는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이 1,876건(73.7%)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176건(6.9%), ‘사생활 침해’ 55건(2.2%), ‘재산상 손해’ 4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분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타’(390건/15.3%) 항목이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증가하였다. 기타 항목은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고 타 기관으로도 안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피해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단순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표 32 |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피 해 유 형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3	2,746 (100)	2,101 (76.5)	279 (10.2)	101 (3.7)	175 (6.4)	90 (3.3)
2014	2,217 (100)	1,831 (82.6)	163 (7.4)	30 (1.4)	58 (2.6)	135 (6.1)
2015	2,545 (100)	1,876 (73.7)	176 (6.9)	55 (2.2)	48 (1.9)	390 (15.3)

\* ( ) 안의 숫자는 %

### 4. 상담매체 유형

상담매체로는 인터넷신문이 974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538건(17.6%), 일간신문 468건(15.3%), 뉴스통신 162건(5.3%), 주간신문 124건(4.0%), 인터넷뉴스서비스 115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매체 중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상담신청 비중은 2013년 28.2%, 2014년 30.9%, 2015년 31.8%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쇄매체 관련 상담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간신문은 2013년 21.2%, 2014년 19.4%, 2015년에는 15.3%로 줄어들었고, 주간신문 역시 2013년 8.3%, 2014년 5.0%, 2015년 4.0%로 감소하였다. 이는 뉴스 소비 방식이 기존의 인쇄매체 중심에서 인터넷매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에 집계된 6건의 ‘기타’ 상담매체는 팟캐스트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뉴스생태계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표 33 | 상담매체 유형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매체건수	상담 매체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2013	2,746	3,037 (100)	644 (21.2)	251 (8.3)	690 (22.7)	24 (0.8)	182 (6.0)	855 (28.2)	86 (2.8)	5 (0.2)	300 (9.9)
2014	2,217	2,464 (100)	479 (19.4)	124 (5.0)	517 (21.0)	13 (0.5)	143 (5.8)	761 (30.9)	53 (2.2)		374 (15.2)
2015	2,545	3,064 (100)	468 (15.3)	124 (4.0)	538 (17.6)	18 (0.6)	162 (5.3)	974 (31.8)	115 (3.8)	6 (0.2)	659 (21.5)

\* ( ) 안의 숫자는 %

\* 매체 유형은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 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 5. 상담신청인 유형

2015년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보자면 개인이 1,655건(65.0%), 회사 369건(14.5%), 일반단체 238건(9.4%), 지자체 및 공공단체 150건(5.9%), 교육기관 60건(2.4%), 국가기관 49건(1.9%), 종교단체 24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상담신청인 분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4 | 상담신청인 유형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신청인 유형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13	2,746 (100)	1,705 (62.1)	57 (2.1)	254 (9.2)	385 (14.0)	87 (3.2)	29 (1.1)	229 (8.3)
2014	2,217 (100)	1,372 (61.9)	60 (2.7)	217 (9.8)	311 (14.0)	58 (2.6)	53 (2.4)	146 (6.6)
2015	2,545 (100)	1,655 (65.0)	49 (1.9)	238 (9.4)	369 (14.5)	60 (2.4)	24 (0.9)	150 (5.9)

\* ( ) 안의 숫자는 %

## 6. 상담내용 유형

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건수 중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은 1,799건(54.8%)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 757건(23.1%), 기사삭제 210건(6.4%), 형사고소 120건(3.7%), 추후보도 89건(2.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비해 기사삭제 관련 상담이 69건(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삭제는 집계를 시작한 2012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상담신청인이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5 | 상담내용 유형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 내용 건수	상담내용 유형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기사 삭제	강제 집행절차	형사 고소	기타
2013	2,746	3,651 (100)	2,043 (56.0)	101 (2.8)	1,152 (31.6)	21 (0.6)	109 (3.0)	1 (0.0)	35 (1.0)	189 (5.2)
2014	2,217	2,959 (100)	1,740 (58.8)	80 (2.7)	856 (28.9)	11 (0.4)	141 (4.8)		31 (1.0)	100 (3.4)
2015	2,545	3,284 (100)	1,799 (54.8)	89 (2.7)	757 (23.1)	30 (0.9)	210 (6.4)	1 (0.0)	120 (3.7)	278 (8.5)

\* ( ) 안의 숫자는 %

\* 상담내용은 복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 7. 복제기사 및 댓글 상담현황

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상담대상 현황을 집계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원 기사가 1,205건(78.0%), 포털 등 매개기사 93건(6.0%),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전재(轉載)된 복제기사 51건(3.3%), 댓글 49건(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기사, 복제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는 12.5%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다양한 경로로 심화·확산되고 있어 잘못된 원 기사에 대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은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 기사에서 파생하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조정 심리 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모색하고 있다.

표 36 | 상담대상 유형

(2015. 7.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대상건수	상 담 대 상				
			원 기사	매개기사	댓글	복제기사	기타
2015	1,357	1,545 (100)	1,205 (78.0)	93 (6.0)	49 (3.2)	51 (3.3)	147 (9.5)

\* ( ) 안의 숫자는 %

\* 2015년 7월부터 집계 시작

\* 상담대상은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합계가 불일치

##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2015년 총 2,545건의 상담신청을 처리하였다. 이는 전년 2,217건에 비하여 14.8% 증가한 수치다.

201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상담원의 친절성’ 95.0점, ‘상담원의 경청자세’ 94.7점, ‘신속한 상담’ 92.4점, ‘적극적인 상담’ 91.3점, ‘상담내용의 신뢰성’ 91.5점, ‘문제해결에 도움’ 87.5점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의 만족도는 6개의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2014년과 대비하면 3.4점 상승하였으며, 조사 항목 중 2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위원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언론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상담신청인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신청은 2013년도 30.8%, 2014년도 87.9%(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29.7%), 2015년도 53.0%(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26.0%)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Eye-Net을 통한 신청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그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대량사건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량사건의 증감에 따라 Eye-Net을 통한 신청 비율에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적인 이슈 발생에 따른 대량사건 접수 가능성이 상존함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언론중재 Eye-Net’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정비에 주의를 다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기반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언론피해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제시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에 실무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상담신청인의 피해에 공감하고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상담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 제2장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 제1절 개요

2015년 들어 위원회 교육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종전까지 교육실시 주기 및 주제에 따라 ‘ADR 교육’과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으로 나누어져 실시해 오던 교육을 2015년부터는 ‘언론중재아카데미’의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였다. 연속교육팀과 수시교육팀으로 구분되던 교육부서도 개편하여 교육운영팀이 교육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콘텐츠팀이 교육 내용 연구 개발 및 강의의 질적 향상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갖춰졌다.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은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반면 기존의 ADR 교육은 ‘분쟁해결 전문연수’로 개편하고, 그 아래에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분야별 연수’를 신설하여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신설하여 연 4회 개최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로 명칭을 바꾸고 6시간 중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방학기간 외에도 연중 실시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바뀐 체계를 통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에 힘쓴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모두 391회의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년도 207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표 37 | 2015년도 교육 실시현황

(2015. 1. 1. ~ 2015. 12. 31.)

구 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연수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계
언론인		61	7		68
공무원 등	국가기관 / 지자체	21	7		28
	교사 / 교직원	47	7		54
	군 / 경 / 소방관	26			26
	공공기관 / 공기업	11	5		16
예비 법조인		4	2		6
기업 임직원		10	1		11
학생	대학생	34	6		40
	중고생	35		73	108
	초등학생	5		25	30
일반인		1	3		4
계		255	38	98	391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15년 위원회는 총 255회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대상 별로 살펴보면, 언론인 61회, 공무원 등 105회, 예비 법조인 4회, 기업 임직원 10회, 학생 74회, 일반인 1회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 예방교육에 주력하여 각 지역 권역별 및 직능별 언론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기회가 취약할 수 있는 군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내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언론인 대상 교육 건수는 61회로 전년도 28회에 비해 33회(117.9%) 증가하였다.

기업체 대상 교육은 경제단체 및 직군별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공조해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언론피해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다수 기업의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직군별 세미나, 워크숍 등의 과정에도 출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8 |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대상	언론인	공무원 등	예비 법조인	기업 임직원	학생	일반인	기타	계
2013		32 (802)	52 (2,494)	1 (30)	10 (335)	35 (2,047)	2 (25)		132 (5,733)
2014		29 (628)	49 (3,307)	3 (97)	19 (577)	37 (1,543)	1 (14)	1 (50)	139 (6,216)
2015		61 (1,597)	105 (6,255)	4 (58)	10 (657)	74 (4,293)	1 (15)		255 (12,875)

\* ( ) 안의 숫자는 교육인원

## 2. 분쟁해결 전문연수

위원회는 종전의 ADR 연수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개편하였다. 교육 대상에 상관없이 ADR 관련 내용과 언론대응 관련 내용을 동시에 교육하던 것에서 벗어나 교육 대상의 특성 및 요구에 맞도록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과 ‘갈등 해결 역량강화과정’을 각각 개설하였다. 두 과정은 각각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구성 되어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공무원, 교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4회의 워크숍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바람직한 기사작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5년 위원회는 38회의 분쟁해결 전문연수를 실시하였다.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관위탁, 워크숍, 교원 순이었고 총 1,258명의 교육생이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을 이수하였다.

### 가.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은 기업 또는 기관의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언론홍보 방안, 평상시 위험 관리 및 위기사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4차

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수는 기본적 언론홍보 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일반과정과 위기관리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심화과정을 개설하였다. 연수를 단계별로 구성해 각 교육대상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을 얻고 있다.

총 10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광주와 부산지역에서도 연수를 실시해 지역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홍보담당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1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

[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원	비고
제1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7. 20. ~ 7. 21.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25명	기본
제2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9. 22.	광주·전남지역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9명	기본
제3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0. 8.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 홍보담당자 및 임직원	40명	기본
제4차 언론대응 및 홍보과정	11. 12. ~ 11. 13.	기업·기관 홍보담당자 등	17명	심화

**나.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위원회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실시해 오던 ADR 관련

연수를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으로 개편하여 연 4회 실시하였다

ADR 기구 임직원뿐 아니라 상담사, 시민단체 운동가를 비롯하여 갈등 해결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개인 간 사소한 갈등부터 지역 및 정책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언론분쟁사례를 통해 갈등조정을 익히는 교육은 위원회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교육내용으로 많은 교육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 [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원	비고
제1차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7. 28, 30. / 8. 4.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6명	기본
제2차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10. 27, 29.	"	18명	심화
제3차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11. 16, 18, 20.	"	22명	기본
제4차 갈등해결 역량강화과정	11. 23. ~ 11. 24.	ADR 기구 임직원 등	26명	심화

#### 다. 분야별 연수

##### 1) 공무원·공공기관 연수

위원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공보담당자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공공기관 직원 대상 ADR 교육을 확대 발전시켜 공무원 연수와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영역과 밀접히 관련된 공공갈등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대민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언론 홍보 및 분쟁대응 역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무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뉴미디어 환경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연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초빙한 점이 특징이다. 언론 홍보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은 현직 기자와 홍보대행사 대표가,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강의는 학계 연구자가 강의를 맡아 분야별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형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연계하여 갈등관리 시범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소통·갈등관리·통합 부문의 문제해결 역량이 요구되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현장적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갈등관리

교육의 체계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공공기관 공보담당자 연수 ]

[ 공무원·공공기관 연수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 원
제1차 공무원 연수	4. 16. ~ 4. 17.	서울특별시 공무원	16명
공공기관 공보담당자 연수	4. 20. ~ 21.	공공기관 공보담당자	20명
제2차 공무원 연수	5. 7. ~ 5. 8.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15명
제3차 공무원 연수	9. 8. ~ 9. 9.	전국 지자체 공무원	12명
제4차 공무원 연수	10. 22. ~ 10. 23.	서울특별시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13명

2) 교원 연수

위원회는 교사, 교육전문직, 전문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7차례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갈등관리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과 언론대응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법과 학교 관련 언론분쟁의 해결방안을 다루었다.

특히, 2015년에 부산과 광주사무소에 강의실을 개설하였고, 위원회가 해당 지역 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교원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과정도 신설하였다. 일선 교사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조

정중재기법과 함께 정책적 의사결정자로서 ADR 원리를 학교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교원 연수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인 원	학교분류별 연수자 인원			
			초	중	고	기타*
제1차 교원 연수	1. 5. ~ 1. 9.	26명	4명	16명	4명	2명
제2차 교원 연수	1. 12. ~ 1. 16.	25명	6명	11명	7명	1명
제3차 교원 연수	7. 27. ~ 7. 31.	15명	10명	2명	2명	1명
제4차 교원 연수	8. 3. ~ 8. 5.	23명	16명	7명		
제5차 교원 연수	8. 10. ~ 8. 12.	16명	3명	8명	3명	2명
제6차 교원 연수	8. 17. ~ 8. 19.	28명	9명	11명	5명	3명
제7차 교원 연수	10. 13. ~ 10. 16.	15명	1명	10명	2명	2명

\* 특수학교 및 종합학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연수자

3) 예비 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2주, 총 80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과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ADR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 다각적 분쟁해결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의 실제 조정사건을 바탕으로 모의 토론회를 열어 능동적으로 체득하는 실무수습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 원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2. 2. ~ 2. 13.	2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32명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	8. 10. ~ 8. 21.	1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20명

4) 대학생 연수

위원회는 2015년 언론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언론 관련 법적 소양과 언론 현장의 경험을 소개하는 대학생 연수를 신설하였다. 6차례에 걸쳐 총 10개 대학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부산과 광주사무소 강의실에서 각 2회씩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 대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학생 연수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교육 참석이 가능하도록 방과 후 시간대에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선배 언론인이 직접 생생한 현장 경험담과 기사 작성법 등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 원
제1차 대학생 연수	7. 3.	부산대 언론사 소속기자	24명
제2차 대학생 연수	7. 10.	성공회대, 신구대, 국민대, 한양대 언론사 소속기자	15명
제3차 대학생 연수	7. 21.	전남대 언론사 소속기자	14명
제4차 대학생 연수	10. 8.	이화여대 언론사 소속기자	22명
제5차 대학생 연수	10. 22.	동의대 언론사 소속기자	11명
제6차 대학생 연수	11. 17.	조선대, 호남대 재학생	36명

5) 외국 언론인 연수

위원회는 재외 동포 언론인 및 이집트, 미얀마, 라오스 등 세계 각지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언론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수생들은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 제3차 외국 언론인 연수 ]

## [ 외국 언론인 연수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 원
제1차 외국 언론인 연수	4. 23.	재외동포언론인	60명
제2차 외국 언론인 연수	11. 9.	8개국 외국 언론인	8명
제3차 외국 언론인 연수	11. 19.	10개국 외국 언론인	27명

## 6) 기관위탁 연수

위원회는 매년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참모과정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기관위탁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내방 견학, 파견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과정별 교육대상에 맞게 교육과정을 세밀히 설계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 [ 기관위탁 연수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 원
제1차 기관위탁 연수	5. 12.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생	60명
제2차 기관위탁 연수	9. 8. ~ 9. 9.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214명
제3차 기관위탁 연수	11. 23. ~ 11. 24.	국방대학교 합동참모과정 교육생	120명

## 7)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언론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인터넷신문 소속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워크숍 과정을 신설하고, 4차례에 걸쳐 1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지역 언론인들을 위해 단기간 내에 심도 있고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지역 인터넷신문협회 등과 연계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취재 보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활동에 요긴한 관련 법규 및 조정중재절차 실무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

[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

(2015. 1. 1. ~ 2015. 12. 31.)

과 정 명	일 자	대 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3. 20. ~ 3. 21.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의 소속 기자	27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5. 28. ~ 5. 29.	전북 인터넷신문 등 대표 및 기자	19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5. ~ 11. 6.	인터넷신문위원회 회원사 기자	37명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2. 7. ~ 12. 8.	지역 언론사 대표 및 기자	95명

### 3.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인격권 관련 소양 교육과 더불어 언론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5년에는 증가하는 청소년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심도 있는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등으로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위원회 청소년 교육 또한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총 98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830명의 이수를 배출해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하였다. 전국 9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서울 및 일부 광역도시에서만 실시하였던 전년에 비해 교육생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3시간 표준과정과 별도로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종일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월 1회 운영하였다. 종일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이 직접 법의침해 사항의 기사를 심의해 봄으로써 위원회 고유의 법정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사심의 체험실습과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노력은 교육적 가치와 체험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원회를 서울학생배움터로 지정하였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도 우수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는 등 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전문 교육기관으로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 4. 교육콘텐츠 개발

### 가. 교육콘텐츠의 다각화

위원회는 2015년도에 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여, 강의 외에 주제 및 대상에 따라 최적화된 교육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용 교재 외에 명예훼손, 초상권, 범죄보도, SNS 관련 분쟁 및 협상·조정 등으로 세분화된 주제의 교육용 PPT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교육대상과 관련해서는 언론인, 초·중·고생, 기업 및 기관 홍보담당자, 대학생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내용의 교육용 PPT를 개발하였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의 경우, 교육 시간을 세분화하

여 각 교육 시간에 충실한 프로그램들을 구성,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유형 및 내용 ]

시 간	유 형	프 로 그 램
3시간	기본 프로그램	기본 강의, 모의조정, 위원회 견학, 이수증 수여
	견학 프로그램	기본 강의, 언론사 및 위원회 견학, 이수증 수여
4시간	체험형 프로그램	기본 강의, 모의조정, 기사심의체험 또는 도전 골든벨, 위원회 견학, 이수증 수여
6시간	체험형 프로그램	기본 강의, 모의조정, 기사심의체험, 도전 골든벨, 위원회 견학, 이수증 수여

또한, 기존 교육용 PPT 외에도 핸드북 형태의 언론인용 교육교재인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제작하였다. 2015년 12월 발간된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는 교육 현장에서 강사들이 직접 취합한 현직 언론인들의 질의 내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언론 현장에서 문제제기된 것에 대한 결과여서 취재 및 보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으리라 예상된다.



[ 언론인용 핸드북 ]

### 나. 교육수강생 중심의 '체험형 강의' 활성화

교육콘텐츠팀은 기존의 강의 위주 교육에서 더 나아가 교육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강의를 개발,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서는 모의조정을 적극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조정사례를 가지고 직접 모의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나아가 위원회 법정사업 중 하나인 시정권고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사 심의에 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였다. 또한, 강의 내용 및 기사 심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사항들을 모아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무원 및 언론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도 모의조정을 시도해 보았는데 능동적 교육 참여를 통한 학습효과 증진, 만족도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제3절 평 가

2015년 위원회 교육사업은 전년도의 두 배 가까운 교육실적을 올리는 등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해보다 수준 높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중재아카데미의 ADR 교육과 언론피해구제 교육으로 이원화되었던 교육 체계를 언론중재아카데미의 이름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 분쟁해결 전문연수를 교육주제와 대상에 따라 세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주제 및 교육대상별로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핸드북 형태의 언론인용 교육교재를 새로 제작·배포하는 등 취재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에 강의실을 개설하는 등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교육 활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언론인 교육에 주력하여,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신설하는 등 지역 언론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다.

여섯째, 인턴십 프로그램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로 개편하여 연중 실시하고, 종일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6년에도 위원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교육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언론인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수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 및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적 실시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5년 개편한 언론중재아카데미의 고도화를 위해 연수기획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교육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관기관의 전문교육을 통해 과정설계의 기초부터 사후평가까지 교육운영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쌓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적극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강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형태의 언론피해 양상 및 해결방안 등 언론피해구제 관련 최신 법률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한편, 위원회 고유의 분쟁해결 노하우를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위원회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인을 위해 야간 연수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각 연수별 대상에 보다 특화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무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인격권과 관련된 언론법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할 수 있는 본격적인 학술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하였다. 1981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저널리즘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삼아 주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공공갈등조정 사례를 통해 조정과 협상의 활용도와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과 <2014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는 통계적 분석과 주요 사례를 수록하여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시대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언론 개념의 재정립과 법제적 수용방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 가.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법제 및 언론계 이슈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해 1981년부터 계간 <언론중재>를 발간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는 현직 언론인, 교수, 법조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통해 언론법제 분야의 이슈와 쟁점을 선별하고, 미디어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의 수준 높은 분석과 미디어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정보를 제공하여 언론법제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언론중재>는 지난 2013년부터 언론법제 관련 전문지로 편집체제를 개편하면서 해마다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언론중재>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를 통해 ICT 생태계의 진화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Focus on Media’ 코너에서는 ‘세월호 보도’, ‘기사댓글’, ‘포털의 공공성’, ‘신생 뉴스플랫폼의 선거보도 공정성’ 등 2015년 한 해 동안 저널리즘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의 진화에 따른 해외 법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해외 판결’ 코너를 신설하고, 영국과 일본 등 대외적 미디어 환경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통신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 언론법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였다. 또한, 언론 관련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해석을 다룬 ‘사건 속 법률’ 코너 등에서는 시사적이고 대중적인 콘텐츠를 통해 언론법제 분야의 대중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

호 수	주요 내용
2015년 봄호 (통권 134호)	<p>[Focus on Media : 세월호 사건 1년, 우리 언론에 남겨진 문제들]</p> <p>(1) 언론조정을 통해 본 세월호 보도 (김동규) (2) 세월호 보도에 나타난 기사 어뷰징 양상과 법적·윤리적 이슈 (최진순) (3)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 그 쟁점과 딜레마 (박진규)</p> <p>[사건 속 법률]</p> <p>풍자와 모욕 사이, 샤를리 엥도 만평 (전학선)</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신생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소비와 인격권 보호 (이승선)</p> <p>[주목할 만한 판결]</p> <p>뉴스 포털의 전제 기사 관련 댓글에 대한 책임 범위 &lt;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한 평석&gt; (김재협)</p>

호 수	주 요 내 용
2015년 여름호 (통권 135호)	<p>[Focus on Media : 열린 공간, 닫힌 댓글] (1)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댓글의 효과와 사회적 함의 (이은주) (2) 인터넷상의 아누스, 악플의 심리학 (나은영) (3) 판결로 본 기사댓글의 법적 책임 (윤성옥)</p> <p>[사건 속 법률] 누구를 위해 언론은 보도하는가 - 언론 윤리와 JTBC 성완중 인터뷰 녹음파일 방송 논란 (양재규)</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 페이스북과 EU의 공방 (성선제)</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영국 명예훼손법 및 해설 (박용상)</p>
2015년 가을호 (통권 136호)	<p>[Focus on Media :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 (1) [이슈진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과 ‘유사언론’ 논란 (임영호) (2) 포털 공공성의 의미와 포털 규제 논의의 근거 (하진성) (3) 포털의 뉴스정책과 공공성 제고방안 (김위근)</p> <p>[칼럼] “그 사람 이름을 왜 알려고 하니?”...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심석태)</p> <p>[사건 속 법률] 후보자검증 의혹제기의 법적 한계 -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보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소영)</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소셜 미디어 뉴스, 포털로 진화하나 (이성규)</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김민정)</p>
2015년 겨울호 (통권 137호)	<p>[Focus on Media : 뉴스 플랫폼의 다변화와 선거보도의 공정성] (1) SNS와 팟캐스트를 통한 선거 콘텐츠의 유통과 저널리즘 (임종섭) (2) 포털의 선거 콘텐츠 유통과 공정성 (심미선) (3) 신생 뉴스 플랫폼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딜레마 (하승태)</p> <p>[사건 속 법률] ‘일베충’과 ‘튼보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한상규)</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MCN, 그 발달함의 근원 (조영신)</p> <p>[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취지 및 해설</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위법한 기사댓글에 대한 뉴스포털의 책임-Delfi 판결 평석 (박용상)</p>

## 나.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

위원회는 언론법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하였다.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축이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언론의 개념과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창간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를 기획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언론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창간호에는 2편의 기획논문과 5편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와 이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등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퍼블리시티권 등 언론법제의 주요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가 개진되었다.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언론법제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촉진하고자 학술지 수록 논문 전문을 온라인(<http://www.pac.or.kr>)에도 공개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수록 논문 ]

구 분	저 자	논 문 제 목
기획논문	윤영철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류정호	디지털 뉴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 규제법규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반 연구논문	김영주 박창문	미디어 악세스권 확보방안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경남중재부의 조정처리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아	중국 국제법상 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
	박기주	재산권이론으로 본 퍼블리시티권 특성에 관한 연구 : 인격권의 재산권화 경향을 중심으로
	신상민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이수중	공적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단기준의 법적 의미

#### 다. 계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위원회 조정 실무의 개선을 위해 설득과 수사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라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제호를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로 변경하고, 갈등관리 연구 영역을 비롯해 스피치, 역사, 문화,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고를 중심으로 하여 ADR 분야의 전문지로 그 내용을 일신하였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는 설득과 관련한 이론과 역사적 배경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나 서울시 갈등조정 담당관과 같은 조정현장 실무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국내외 갈등 조정사례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독자층을 넓히고 발간물의 활용도와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위원회는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를 조정 실무의 참고 자료로 위원회 중재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만한 해소 방안과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위원회 교육콘텐츠로도 활용, 조정업무 실무자나 일반인에게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정부부처, 법원(조정센터 포함) 및 검찰, 법학전문대학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유

관기관 및 학회, 갈등조정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여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계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주요 내용 ]

호 수	주 요 내 용
2015년 봄호 (vol.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정에서 전략적 개입으로서 질문 (문용갑)</li> <li>2.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대화의 기술 (민영욱)</li> <li>3. 조선 역관에게 배우는 협상과 설득의 지혜 (이상각)</li> <li>4.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방법과 지혜 (김광구)</li> </ol>
2015년 여름호 (vol.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문화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조정전략 (정주진)</li> <li>2. 갈등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조정기법 (구울화)</li> <li>3. 조정·중재를 성공으로 이끄는 ‘프레이밍’ (박성희)</li> <li>4. 맹자(孟子)에게 배우는 설득과 수사 (나만구)</li> <li>5. 성공적인 공공갈등 해결의 방법과 지혜 (박수선)</li> </ol>
2015년 가을호 (vol.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과 조정인의 설득 전략 (이현우)</li> <li>2. 갈등을 증폭시키는 성격장애의 유형과 대응방안 (장성원)</li> <li>3.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이상철)</li> <li>4.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 의 전개과정과 반추 (이선우)</li> </ol>
2015년 겨울호 (vol.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동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설득 (안서원)</li> <li>2. 스티브 잡스 스피치에 담긴 설득의 비기 (황순희)</li> <li>3. 조정·중재인을 위한 윤리 노트 (손경한)</li> <li>4.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의 분쟁해결이야기 (홍수정)</li> <li>5. 호주인권위원회 ADR제도의 현황과 사례 (이현주)</li> </ol>

**라.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 사건 및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에는 위원회가 2014년에 처리한 19,048건의 조정사건과 11건의 중재사건 중에서 32건을 선정하여 자세한 사건 관련 사항을 수록하였다. 인격권 침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사례 17건, 초상권 침해 사례 9건, 음성권 침해 사례 2건, 성명권 침해 사례 2건, 사생활 침해 사례 1건, 기타 사례 1건 등이다. 이와 함께 전체사건의 목록을 수록하여 2014년 발생한 언론분쟁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대량사건이 있어서 이를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또 접수목록을 사건 연번 순이 아닌 중재부별로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302건의 언론보도 중 16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3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1건, 사생활 침해 3건,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4건, 자살 관련 보도 3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2건 등이다.

## [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li> <li>-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 현황</li> <li>-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li> <li>- 주요 시정권고 사례</li> <li>-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li> </ul>	E-Book (620면)

**마.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분석해 그 결과와 주요 판결을 담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보고서는 언론계와 학계에서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현직 언론인의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및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2014년에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59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함께 명예훼손 판결 24건, 모욕 관련 판결 3건,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판결 7건, 재산권 침해 판결 1건 및 헌법재판소 결정 1건 등 법리적으로 의미 있고 시의성 있는 판결 36건을 선정,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2. 세미나·토론회 개최****가. 정기세미나**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을 맞아 2015년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성희 중재위원(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세미나에서는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가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동규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성욱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언론피해구제제도 시행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짚어보았다.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오보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인터넷 상에 원 기사가 남아 피해자의 인격권이 계속해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생 뉴스플랫폼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 2015년도 정기세미나 ]

[ 2015년도 정기세미나 개최현황 ]

일 자	2015. 8. 20. ~ 21.
장 소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주 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참석인원	언론계, 법조계, 학계,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약 70여 명

### 나. 토론회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언론계의 현안과 관심사를 청취하기 위해 수원과 광주에서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월 개최된 경기도토론회에서는 홍문기 중재위원(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도록 언론법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였다. 정정·반론보도만으로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려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복제·전파된 권리침해적 보도나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일괄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월 개최된 광주토론회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정민 중재위원(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발제를 통해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기사삭제청구권의 제도화와 자율규제의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권리침해적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 언론중재제도에 기사

삭제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두 차례의 지역 토론회를 통해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관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빠르고 효과적인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지역 언론과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토론회 개최현황 ]

구분	경기토론회	광주토론회
일 자	2015. 4. 21.	2015. 6. 30.
장 소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주 제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참석인원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지역 언론계·학계·법조계 관계자 및 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지역 언론계·학계·법조계 관계자 및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

#### 다.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15년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신성범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회가 마련한 인터넷 상의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음 공개하였다. 개정안은 인터넷 상의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잘못된 기사의 복제 및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책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수일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언론피해영역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따라 확장되고 있으나, 구제방안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고 있다”면서, “새로운 피해양상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인격권에 근거한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복제기사·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조발표 후 ‘인터넷 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상원 중재위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더욱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

여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KBS와 M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현장취재를 하는 등 언론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았다.



[ 정책토론회 ]

[ 정책토론회 개최현황 ]

일 자	2015. 10. 13.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 제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
참석인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언론계, 학계,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90여 명

### 라. 중재위원 연수

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전국 18개 중재부 중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위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ICT생태계 진화에 따른 뉴스플랫폼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수일 중재부장(서울 제8중재부)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조재연 위원(서울 제1중재부)이 '대량사건 처리 조정사례'를, 이기우 위원(서울 제5중재부)이 '조정사례로 본 보도의 복제글·덧글 관련 피해 구제'를, 홍문기 위원(경기중재부)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기사 어뷰징에 대한 실무적 피해구제 방안'을, 김선남 위원(전북중재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언론 간의 분쟁조정 사례 검토'에 대해 각 위원이 담당하였던

조정사례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각 사례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 중재부가 경험한 조정사례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중재위원 연수 ]

[ 중재위원 연수 개최현황 ]

일 자	2015. 11. 5. ~ 6.
장 소	충청남도 덕산면 리스스파캐슬
주 제	특강 : ICT생태계 진화에 따른 뉴스플랫폼의 변화 워크숍 : 중재부별 조정사례 발표
참석인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51명

#### 마.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2회의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중 지역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는 2회(강원, 부산),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는 10회 개최하였다.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는 중재위원과 지역언론인 간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언론 현안에 대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지역 언론의 고충을 듣고 조정·중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역언론인과의 의견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과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언론법제와 저널리즘 관련 분야의 도서 및 정기간행물을 비치하여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개설 이후 지속적인 신규 도서 구입과 정기간행물 구독범위 확장을 통해 중재위원 및 직원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자, 연구자들의 실무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언론 및 법학 분야, 설득 및 수사 분야, 업무 관련 서적 218권을 신규 비치하였으며, 언론법제와 관련한 최신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종의 간행물을 구독 중이다.

#### [ 연도별 자료실 도서구입 현황 ]

(2015. 12. 31. 현재 / 단위: 권)

연 도	국내도서	국외도서	합 계
2011년 이전	3,722	674	4,396
2011	236	63	299
2012	140	18	158
2013	172	2	174
2014	266	22	288
2015	201	17	218
총 계	4,737	796	5,533

## 제3절 평 가

위원회는 그동안 쌓아온 이론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2015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언론법제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계간 <언론중재>는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으로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콘텐츠도 강화하였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는 2015년부터 내부 필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필진을 대폭 확대하고 내용도 사례 중심으로 개편, 현장 조정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세미나, 토론회 등 각종 학술행사는 현행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언론 현업 종사자나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장이 되었으며,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는 위원회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음 소개하고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국회, 언론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4장

## 이용만족도조사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상담·교육서비스 등 위원회 주요 사업 이용만족도를 매년 조사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정·중재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설문지는 ‘상담창구’, ‘신청절차’, ‘심리 전 절차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 ‘심리 후 절차안내’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신청인 조사에서 ‘상담창구’와 ‘신청절차’ 차원을 제외한 3개 차원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상담이용자 조사는 ‘상담원의 친절’, ‘상담원의 경청자세’ 등 6개 항목에 대해, 교육수강자 조사에서는 ‘주제 및 내용’, ‘교육 자료의 충실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조사에서는 조사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행 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모델을 개선하였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침해배제청구권과 댓글·복제기사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5년도 이용만족도조사는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 전문업체인 나이스알앤씨(주)가 대행하여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별로 온라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신청인·피신청인), 전화조사(상담이용자), 교육 후 현장 설문조사(교육수강자)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책자로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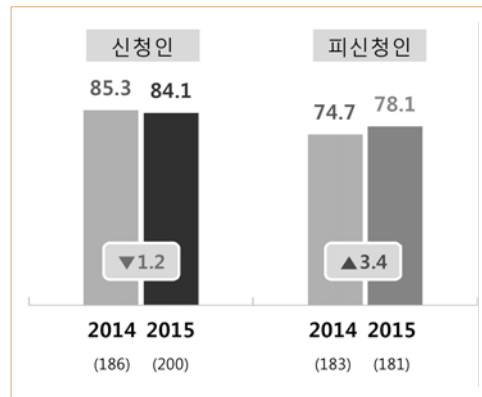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2015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84.1점으로 2014년보다 소폭(1.2점) 하락한 반면,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8.1점으로 전년보다 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 차원이 9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 전 절차안내’(87.3점) > ‘신청절차 및 방법’(86.0점) > ‘심리 후 절차안내’(83.6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9.1점) 순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안내’(83.2점) > ‘심리 후 절차안내’(80.3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3.6점) 순이었다.

신청인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원의 경청자세’(93.0점)와 ‘상담원의 친절’(92.7점), ‘심리 기일의 신속한 통보’(90.1점) 항목 등이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피신청인 항목별 만족도는 ‘심리 기일의 신속한 통보’(87.6점), ‘담당직원과의 접촉 용이성’(86.7점), ‘지참물에 대한 안내’(86.2점) 항목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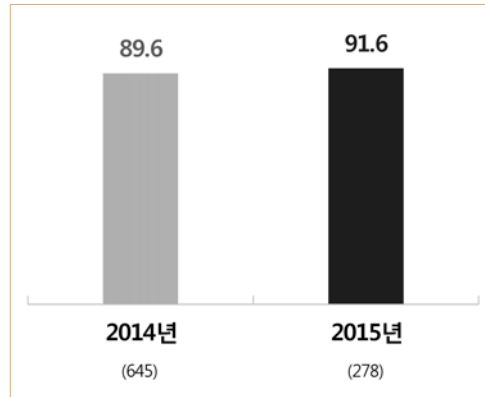


[응답자수 = ( ), 단위 = 점]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91.6점으로 2014년보다 2.0점 상승하였다. 상담채널별로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만족도가 90점대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이메일상담’, ‘인터넷 실시간 상담’ 등 온라인상담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 태도와 관련된 ‘상담원의 친절’, ‘상담원의 경청자세’, ‘신속한 상담’, ‘적극적인 상담’ 항목이 90점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의 만족도가 8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3.4점 상승하였다.

표 40 |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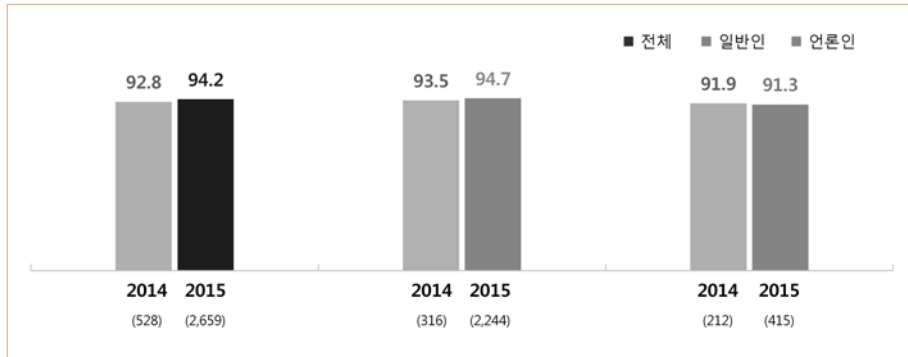
[응답자수 = ( ), 단위 = 점]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는 94.2점으로 2014년 92.8점보다 1.4점 상승하였으며, 교육대상별로는 일반인 종합만족도가 94.7점으로 언론인 만족도 91.3점보다 3.4점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 항목이 9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5.0점) > ‘교육자료의 충실성’(94.0점) > ‘주제 및 내용’(93.1점), ‘제도에 대한 이해’(93.1점) 순이었다.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76.0%, 언론인의 90.4%가 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의 90.7%, 언론인의 96.9%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 필요 + 보통)고 응답하여 위원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표 41 |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응답자수 = ( ), 단위 = 점]

신청인·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신청인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1.5%, 피신청인 응답자의 58.6%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사의 삭제·수정·보완이 가능한 새로운 피해구제방법인 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청인 응답자의 89.0%, 피신청인 응답자의 74.6%가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의 다수(75.5%)는 위원회가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기사댓글에 대한 조정에 대해 피신청인도 46.9%가 찬성하여 이에 반대하는 의견(34.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 보도가 정정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 보도를 퍼나른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보도 피해 경험이 있는 신청인의 대다수(91.0%)가 그 심각성에 동의하였고, 피신청인도 과반수 이상(64.6%)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도 위원회에서 구제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동의 82.0%, 부정 6.0%)과 피신청인(동의 47.5%, 부정 30.4%)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 제3절 평 가

2015년도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조정·중재 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조정·중재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상승하였다. 특히, 피신청인 종합만족도가 2014년에 비해 3점 이상 상승한 점과 상담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의 만족도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상대적 공정성’ 관련 설문에서는 상대방과 비교시 조정(중재)과정이 공정하였는지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신청인 14.0%, 피신청인 12.7%에 그쳐, 이용자들이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외 인터넷 기사의 삭제·수정·보완을 위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기사덧글, 복제기사에 대한 피해구제도 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이용자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 홍 보

##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위원회 블로그를 개설하고 기존의 페이스북을 개편해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는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였다. 또한, 위원회 정책 관련 이슈 발생 시마다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외홍보지,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을 알리고자 KTX 내 모니터,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 블로그 개설 및 페이스북 개편

위원회는 2015년 9월, 블로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개편하여 위원회 관련 뉴스, 최신 미디어 이슈, 언론법제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성향을 고려해 각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다수 게재하였으며, 월평균 2회의 이벤트를 실시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위원회 블로그 방문자 수는 4,619명,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는 4,295건, 트위터 팔로워 수는 6,270명을 기록하고 있다.

[ 월별 블로그 방문자 수 및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

(2015. 9. 1. ~ 2015. 12. 31.)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블로그 방문자 수	686	997	1,644	1,292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	1,816	598	776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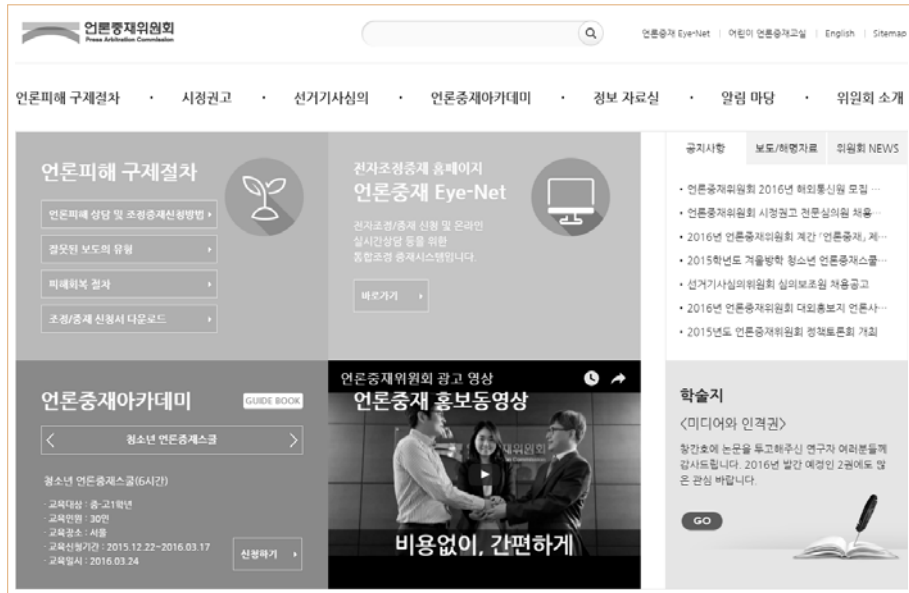
[ 위원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 메인화면 ]

### 2. 홈페이지 개편

위원회는 2015년 웹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기존에 둘로 나뉘어져 있던 위원회 홈페이지와 언론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였다.


메뉴 구조, 디자인 개선을 통한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편리한 관리기능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출품한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2015 웹어워드코리아 공공기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

### 3. 대외홍보지 제작

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은 2015년 2월까지 매월 1만 3천부를, 2015년 3월부터는 매월 1만 2천부를 발행해 배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상담노트, 조정후기 코너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기 쉽게 홍보하였으며, 언론, 음악,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기고문을 게재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세미나·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 위원회 정책과 제도를 알리고자 하였다.

전국 도서관, 공공기관, 시·도청, 군·구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법원, 대학을 비롯하여 전국 1,000대 기업, 각종 경제단체,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정보소외계층 등에 대외홍보지를 배포하였다.



[2015년 발행 <연론 & 사람>]

#### 4. 매체광고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KTX 영상광고, 서울신문사 뉴스 전광판, 영등포 대승빌딩 전광판 등 노출 빈도 및 주목도가 높은 매체를 선정하여 광고를 집행하였다.

KTX 영상광고는 전국 범위의 광고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광판 광고는 서울 중심지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곳을 엄선하여 노출을 극대화하였다.



[ KTX, 전광판 광고영상 화면 ]

[ 매체광고 집행내역 ]

매 체 명	집 행 기 간	비 고
KTX 영상광고	5. 14. ~ 9. 13. (4개월)	17. 19인치 LED모니터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5. 14. ~ 8. 13. (3개월)	12m×9m(양면)
영등포 대승빌딩 전광판	5. 14. ~ 8. 13. (3개월)	18.2m×9m(단면)

5. 미디어 퍼블리시티

위원회는 보도자료 배포,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위원회 주요 정책과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2015년도에는 위원장 언론 인터뷰 2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칼럼이 2회 게재되었으며,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한 보도자료 23건을 배포하여 총 294회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6. 위원회 사료의 디지털 전시

위원회는 사건기록, 간행물, 법규, 문서, 사진, 디지털 파일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사료를 선별하여 보관해오고 있다.

2015년도에는 위원회의 역사와 업무를 홍보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사료 중 일부를 디지털화하여 터치스크린으로 열람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기기를 위원회 강의실에 설치하였다.



[ 위원회 강의실에 설치된 키오스크와 화면 구성 ]

## 제3절      평    가

2015년에는 블로그 개설 및 페이스북 개편, 위원회 홈페이지 통합 개편, 사료 전시용 키오스크 설치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정책·제도 홍보에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각 홍보 채널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각 홍보 채널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비용 대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제 6 장

# 기타 주요활동

###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위원회는 2015년 몽골 및 러시아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에 걸쳐 해외시찰을 실시하였다. 시찰단은 몽골과 러시아의 언론평의회와 러시아 최대 민간 미디어 그룹인 National Media Group을 방문하여 언론보도로 발생한 피해의 구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몽골 및 러시아의 언론환경과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이해하고 우리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현황 ]

시찰자 및 수행자	기 간	방문국	방 문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수일 중재부장 (서울 제8중재부)</li> <li>- 어경택 중재위원 (서울 제5중재부)</li> <li>- 이영덕 중재위원 (서울 제7중재부)</li> <li>- 이재범 기획팀 차장</li> <li>- 김성찬 조사팀 조사관</li> </ul>	2015. 7. 5. ~ 7. 12.	몽골	- 몽골 언론평의회
		러시아	- 러시아 언론평의회 - National Media Group

방문기관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언론분쟁 해결 시스템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언론 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시찰단이 방문한 러시아 미디어 그룹인 National Media Group의 Larisa Prigorodova 부사장은 시찰단의 방문에 “양 기관이 상호소통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 러시아 언론평의회 관계자와의 간담 ]

몽골과 러시아 언론평의회 관계자들은 위원회가 연간 2,5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신청인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시찰은 몽골과 러시아의 언론 현황과 언론피해구제 시스템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해외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국제컨퍼런스 협력

위원회는 2015년 6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AMIC(Asi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각국 언론 관계자와 미디어 전반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국가 언론평의회를 방문하여 아랍에미리트의 언론현황과 언론정책을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 [ 국제컨퍼런스 참가 현황 ]

구 분	내 용
회 의	제24회 AMIC 국제컨퍼런스
기관방문	아랍에미리트 국가언론평의회
일 자	2015. 6. 7. ~ 6. 14.
장 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
주 제	e-Asia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가치, 기술과 도전
참석자 및 수행자	- 오재성 중재부장(서울 제7중재부), 박성희 중재위원(서울 제8중재부), 남부희 중재위원(경남중재부) - 이미경 부산사무소장, 박진규 조사팀 조사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Asia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가치, 기술과 도전’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매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 방문단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언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AMIC 대표단과 간담을 갖고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교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AMIC 대표단은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 제도가 세계 각국의 언론정책에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국제행사 참석을 통해 위원회 제도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AMIC 대표단과의 간담 ]

### 3. 사회공헌 활동

위원회는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 사회공헌단 운영 지침’과 ‘언론중재위원회 사회공헌기금 운영 수칙’을 통합하여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예규’로 전면 개정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공헌활동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6월과 11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용산적십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빵을 만들어 결손 가정 및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12월에는 (사)대방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DIY 가구나누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아동용 책상과 책장을 제작한 뒤 지역 내 저소득아동 5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그 밖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병을 위한 격려금을 기부하였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외 이웃을 찾아가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사회공헌 활동 내용 ]

구분	일자	내용	기부처	기부금액
성금 기부	2015. 5. 28.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000,000원
	2015. 11. 4.	군 장병 격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1,000,000원
봉사 활동	2015. 6. 4.	사랑의 빵나눔터	대한적십자사 용산봉사센터	각 400,000원
	2015. 11. 24.			
	2015. 12. 3.	DIY 가구나누기	대방종합사회복지관	1,000,000원

### 4.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언론피해구제절차의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언론중재 Eye-Net), 전자조정중재시스템, 중재위원업무시스템(PAC Tribunals), 전자문서시스템(PAC광장 :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등 4개 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안정화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2015년 위원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장비를 패치하여 최신 공격 유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언론중재 Eye-Net’에서 사건을 신청한 후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전자조정중재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윈도우 운영체제와 위원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및 업무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비한 사전작업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노후화된 하드웨어 및 솔루션 교체에 대비한 호환성 테스트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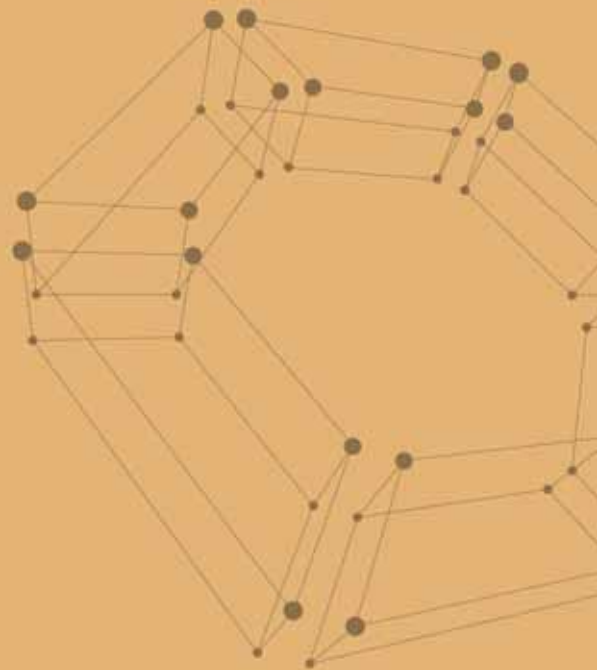
## 언론중재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 제 4 부

#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 의견





# 제 1 장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일부 잘못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명백히 허위 내용을 포함한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 남아 있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마련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1.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경과

● 2014. ~

잘못된 원 보도의 복제기사 또는 기사댓글 및 검색으로 인한 피해 구제요청 사례 발생, 관련 구제방안 검토 시작

● 2014. 10.

여야 의원들, 인터넷 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 시 지적

- 뉴스펀딩 등 뉴미디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박대출 의원)
- 수정이나 삭제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으나 원 보도가 인터넷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박창식 의원)
- 인터넷 매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방법 등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박혜자 의원)
-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등이 피해구제에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이상일 의원)

● 2014. 12. 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 사회자 :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표자 :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토론자 : 박정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SBS 뉴미디어 부장)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 2015. 1.

2015년 위원회 중점과제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 설정

● 2015. 3. ~ 10.

총 8차례에 걸쳐 위원장 주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사무처 내부 토론회 진행

- 조정대상을 복제기사 및 댓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1차)
-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검토(2차)
- 검색에 의한 피해구제방안 검토(3차)
- 게시자의 이의절차를 명문화하고 법원에 불복·제소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4차)
- 신생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5차)
- 언론사 등 피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침해배제청구권의 조정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6차)

## ● 2015. 5. 28.

서울중재부장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김용관(서울 제1중재부장), 강태훈(서울 제2중재부장), 이태수(서울 제4중재부장), 이은신(서울 제6중재부장), 오재성(서울 제7중재부장)

## ● 2015. 6.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8명) 자문 의견 수렴

- 양경승(사법연수원 교수), 양철한(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권(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유봉석(네이버 뉴스플랫폼센터장),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 2015. 8. 20.

언론인 등 초청,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주 제 :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사회자 : 박성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발표자 : 양경승(사법연수원 교수)
- 토론자 : 구본권(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동규(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성욱(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 2015. 9.

국정감사 시, 복제기사 및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 잘못된 보도의 전파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박창식, 윤재옥 의원)
-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한선교 의원)

## ● 2015. 10. 13.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개정안 최초 공개)

- 후 원 : 신성범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주 제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
- 사회자 : 이상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 : 김은태(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 2. 제안이유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은 미디어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인 신속성, 파급성, 기록성 등으로 인터넷 기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명백히 허위 내용을 포함한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 남아 있으며, 일부 잘못된 기사도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언론피해구제법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언론중재법은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정정보도·반론보도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보완을 위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나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사의 삭제·수정·보완 등을 포괄하는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3. 주요내용

- 가.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 기존의 언론보도 정의를 확대하였다. (안 제2조제15호)
- 나.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 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검색, 검색사업자,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다. (안 제2조제22호~제25호 신설)

다. 사회상규나 피해자의 동의는 법에 규정됨으로써 창설되는 효력을 갖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진실의 항변 및 상당성 항변은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일 뿐, 기타 인격권 침해에서는 항변이 될 수 없다. 이에 언론등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안 제5조제2항 삭제)

라.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안 제17조의3 신설)

-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상태를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2) 피해자는 1)의 인격권 침해 기사가 정보통신망에 전파·확산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에게 그 삭제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보도가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언론사 등에게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보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4) 피해자는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사유를 안 후 1년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안 제18조의2 신설)

- 1) 위법한 기사댓글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해당 댓글의 말소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조정성립이나 직권조정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언론사 등은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게시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조정이나 중재,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 피해자는 사이트 관리자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사이트 관리자 등은 접근차단 등 피해 확

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게시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조정이나 중재,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경우 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링크삭제나 검색결과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바. 소송과 관련하여 제17조의3 및 제18조의2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하도록 하였다. (안 제31조의2 신설)

####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p> <p>16. ~ 21.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p> <p>15. “언론보도”란 언론이 전달의 형태나 수단 여하에 불구하고 공공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6. ~ 21. (현행과 같음)</p> <p>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p> <p>23. “검색”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p> <p>24. “검색사업자”란 제23호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p>
<p>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생략)</p> <p>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p>	<p>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li> <li>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ol> <p><b>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b>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⑩ (생략)</p> <p><b>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b>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b>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b> ① -----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으로-----</p> <p>-----.</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b>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b> ① -----</p> <p>-----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b>제17조의3(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b> 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상태를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li> <li>2.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li> <li>3.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행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피해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사가 정보통신망에 전파·확산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에게 그 삭제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언론보도가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중</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언론사 등에게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보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p> <p>④ 피해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과 함께 또는 별도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이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b>제1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b> ①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보도에 관하여 독자 등의 글(음성, 영상, 기타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댓글”이라 한다)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에 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체 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것(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보도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에 소재하는 인터넷 공간의 관리자(이하 “사이트 관리자”라 한다)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이 법 제23조의 합의사항 및 조정결정(본조 제3항의 중재위원회규칙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법 제25조의 중재결정 또는 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의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기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해 직권조정안을 작</p>

현 행	개 정 안
	<p>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사이트 관리자 등은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위 각 결정 등의 결과 및 직권조정안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7일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직권조정안의 취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침해적 댓글의 게시자 또는 제3항의 위법한 보도 기사를 복제·전파한 게시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을 특정하여 제2항의 조정 결과 또는 제4항의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게시자 등의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한다. 게시자 등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제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정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분항에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 관리자 등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인지일 후 분항이 규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이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⑥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법원의 재판을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위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기타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검색사업자는 위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을 행한다. 중재위원회는 검색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분항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⑦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자, 검색사업자, 게시판 또는 사이트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p> <p>⑧ 본조는 제7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제7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본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p> <p>⑨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문서나 결정은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고,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통지, 송달 기타 의사표시의 전달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⑩ 피해자는 제1항의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제3항의 위법한 침해적 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이 존재함을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그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p> <p>⑪ 본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⑫ 중재위원회는 이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 <p><b>제31조의2(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준용)</b> 제17조의3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b>제 1 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 2 조(시행 전 언론보도등의 검색에 관한 경과조치)</b> 제18조의2제6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전파 게시물의 검색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시행 전 댓글 및 복제·전파물에 관한 경과 조치)</u> 제18조의2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전파 게시물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p>

# 제 2 장

## 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법률로는 위원회의 설립 근거법인 언론중재법과 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발의안은 9건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은 5건이 제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 및 그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언론중재법

#### 가. 개정 발의안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김재윤 의원 등 20인 (2012.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li> </ul> </li> <li>●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li> <li>- 전직 언론인 : 국회의장</li> <li>- 기타 :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대통령령)</li> </ul> </li> <li>● 위원장 상임화</li> <li>●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li> </ul>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선거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li> <li>● 중재위원 재위촉(부촉)</li> <li>- 법 시행일 후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재위촉</li> </ul>
최민희 의원 등 20인 (2012.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li> </ul> </li> <li>●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li> <li>- 전직 언론인 : 신문협회와 방송협회</li> <li>- 기타 : 언론 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대통령령)</li> </ul> </li> <li>● 위원장 대통령 임명 및 상임화</li> <li>●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선거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li> </ul> </li> <li>● 위원회 상담 및 교육의 근거조항 마련</li> <li>● 위원회 예산을 국가의 일반회계로 하며, 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상의 중앙 관서의 장으로 봄</li> </ul>
정청래 의원 등 10인 (2012.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명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li> <li>-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분쟁조정위원회</li> <li>- 중재부 → 조정부</li> <li>- 중재위원 → 조정위원</li> </ul> </li> <li>● 중재위원 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중재위원을 정수의 5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함</li> <li>-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중재위원에 포함</li> </ul> </li> <li>● 중재부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li> <li>●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 언론사에 재직 중이거나 언론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언론인은 결격</li> </ul> </li> <li>● 중재부 의결정족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부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li> </ul> </li> <li>●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매개된 언론보도 등에 대해 기사삭제청구 가능</li> </ul> </li> <li>●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병합된 다른 청구에 관한 권리포기 권유 불가</li> <li>● 중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li> <li>●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불성립결정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li> <l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li> </ul> </li> </ul>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p>최민희 의원 등 25인 (2013. 3.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특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li> <li>- 위원회는 명백한 오보로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사등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함</li> </ul> </li> <li>● 명백한 오보로 인한 정정보도문에 대한 매체특성별 세부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 같은 지면, 같은 위치에 오보기사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li> <li>- 방송 : 같은 프로그램의 시작 전 1분 동안 정정보도문을 시작으로 게재하고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것</li> <li>-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목차가 게재되는 지면에 이어지는 1개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li> <li>-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 :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바로 아래 정정보도문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li> <li>- 인터넷뉴스서비스 :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해당 오보기사가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는 모든 공간에 정정보도문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li> </ul> </li> </ul>
<p>박창식 의원 등 10인 (2013. 6.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대통령 임명 및 상임화</li> <li>● 위원장은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li> </ul>
<p>정부 (2013. 6.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위원 결격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li> </ul> </li> <li>● 중재위원 신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함</li> </ul> </li> <li>● 위원회 상담 및 교육의 근거조항 마련</li> <li>● 추후보도청구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절차가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li> </ul> </li> <li>●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을 경우 알림표시 의무 부여</li> <li>●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알림표시 의무 부여</li> <li>●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출석을 갈음하여 조정기일 전까지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봄</li> </ul> </li> <li>● 알림표시 의무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li> </ul>
<p>이재영 의원 등 12인 (2015. 1.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등의 내용 또는 기사 배열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li> </ul> </li> </ul>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김한표 의원 등 10인 (2015.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삭제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며,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li> </ul> </li> </ul>
우윤근 의원 등 13인 (2015.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관할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민사소송법」 제24조의2(개정안)에 따라 언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방법원의 합의부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ul>

## 나. 위원회 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특례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대한 시정 권고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삭제청구 등을 포괄하는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신설</li> <li>- 복제기사 및 기사덧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마련</li> </ul> </li> </ul>

## 2. 공직선거법

### 가. 개정 발의안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교회선 의원 등 10인 (2012.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로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또는 주의를 규정함</li> </ul>
박기춘 의원 등 10인 (2013.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li> <li>•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방송·신문 및 인터넷 언론 종사자 각 2명, 방송사·방송학계·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li> <li>•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처를 둠</li> <li>•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을 방송·게재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명함</li> <li>•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심의기준</li> </ul>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p>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을 발송·게재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기관은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를 하도록 함</li> <li>• 언론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함</li> </ul>
김태년 의원 등 11인 (2015.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권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등 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음. 현행 사과문 게재는 삭제</li> </ul> </li> <li>• 제재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언론사에 대하여는 언론사별로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벌칙은 삭제</li> </ul> </li> </ul>
백재현 의원 등 10인 (2015.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함</li> </ul> </li> </ul>
신정훈 의원 등 10인 (2015.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li> </ul> </li> </ul>

## 나. 위원회 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과문 게재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고, 대신 권리 침해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결정문 게재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선거기사 심의기구가 중앙선관위로 통합될 경우 국가기관이 언론보도를 심의하고 규제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li> <l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함</li> </ul> </li> </ul>

제 5 부

# 2016년도 업무계획





## 제 1 장

#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피해구제시스템 구축

-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 디지털 언론환경에 맞는 조정중재업무의 실효성 강화
-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홍보 및 연구

### ■ 적극적인 언론조정, 심층적인 기사심의

- 공정하고 품위 있는 조정심리를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 인격권에 관한 조정실무 기준 마련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심의 역량 강화
- 인터넷 매체의 법익침해에 대한 중점 심의

### ■ 전문성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

- 특화된 교육콘텐츠 구축 및 강사 역량 강화
- 언론인 교육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 온라인 교육 등 교육방식의 다변화

## 제 2 장

## 과제설정 배경

##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피해구제시스템 구축

-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 위원회는 2015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못된 인터넷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인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위법한 기사덧글 및 복제기사에 대한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위원회가 2015년에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에 발의가 진행되고,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디지털 언론환경에 맞는 조정중재업무의 실효성 강화
  - 현행 법제에서도 인터넷 기사의 전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조정 중재 과정에서 언론사나 포털사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기사의 삭제·수정·보완, 위법한 기사덧글 및 복제기사에 대한 삭제 등 정보통신망 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무처리 지침을 정비함

-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홍보 및 연구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제도임을 알리는 등 법 개정에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정책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함
  - 뉴스생태계의 변화와 디지털 미디어 진화에 따른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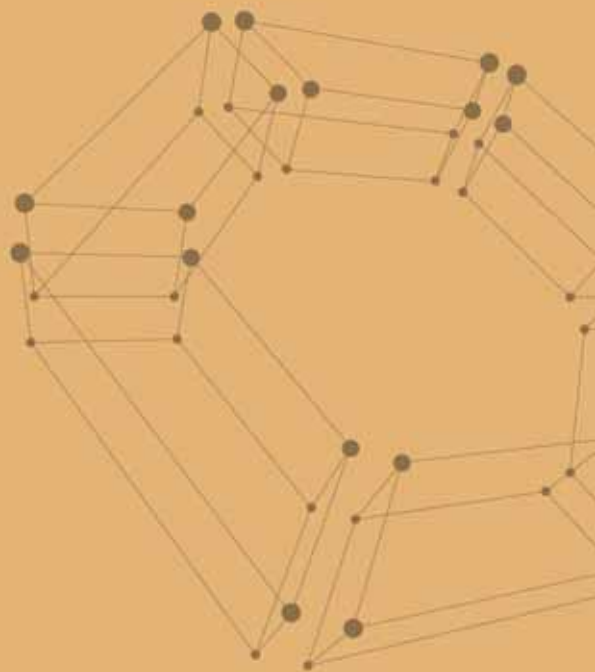
## ■ 적극적인 언론조정, 심층적인 기사심의

- 공정하고 품위 있는 조정심리를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 2015년도 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중재부의 심리진행’과 관련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에 공정하고 당사자를 배려하는 조정심리 진행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인격권에 관한 조정실무 기준 마련
  - 세계 각국의 인격권에 관한 법리 및 판결례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언론조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사건처리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심의 역량 강화
  - 2015년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음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에서는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집중심의체제 운영 등 심의 역량을 강화함
- 인터넷 매체의 법익침해에 대한 중점 심의
  - 인터넷 매체의 심의인력을 보강하여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함으로써 인터넷 매체의 다양한 법익침해에 대해 중점 심의함

## ■ 전문성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

- 특화된 교육콘텐츠 구축 및 강사 역량 강화
  - 언론 관련 분쟁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론대응 협상’ 등 전문연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자체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함
  -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육을 위해 내부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스킬에 대한 외부교육, 교육콘텐츠 전략회의, 교육콘텐츠 공유 등을 통하여 그 역량을 강화함
  
- 언론인 교육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단체와 언론인 교육에 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통해 공동으로 일선 취재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언론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인 교육의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
  
- 온라인 교육 등 교육방식의 다변화
  -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으로 교육 수강이 어려운 1인 미디어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함
  - 교육대상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부 록





##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2015년 12월 말 현재)

임 원	
성 명	주 요 경 력
 <p>위원장 박 용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법 부장판사</li> <li>• 헌법재판소 사무처장</li> <li>• (현)변호사</li> </ul>
 <p>부위원장 김 재 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대변인</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 특별심의위원장</li> <li>• 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li> </ul>
 <p>부위원장 조 동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일보 편집국장, 주필</li> <li>•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li> <li>•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li> </ul>
 <p>감사 조 재 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민사지법 판사</li> <li>• 서울가정법원 판사</li> <li>• (현)변호사</li> </ul>
 <p>감사 송 승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MBC 제작부장</li> <li>• 대구MBC 보도국장</li> </ul>

서울 제1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김 용 관**

- 서울고법 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2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강 태 훈**

- 서울고법 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 용 상**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현)변호사



**지 연 옥**

- KBS 경영본부장 · 시청자 본부장
- (현)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홍 은 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현)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이 희 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조 재 연**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현)변호사



**권 순 택**

-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판국장
- 경찰위원회 위원
- 고려대 미디어학부 관훈신영기금 교수



**지 성 우**

- (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 (현)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 (현)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 제3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박 인 식

- 서울고법 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4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이 태 수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 일 한

- 문화공보부 섭외과장
- 주일본대사관 · 주샌프란시스코 영사관 공보관
- 아리랑국제방송 보도위원



임 경 록

- 연합뉴스 논설위원, 출판국장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한 석 동

- 국민일보 논설실장
- 공보처 기획관, 총리공보실 전문위원
-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도 성 진

- 중앙일보 사회부장, 논설위원
- 에너지경제신문 편집인 겸 부사장



허 은 강

- 인천광역시 상근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양 인 석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변호사



유 세 경

- SBS 편성국 연구위원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학부 교수



이 수 영

- (현)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 위원
- (현)인터넷선거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 (현)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울 제5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홍 이 표**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기 우**

- 공보처 여론과장
- 중국 한국대사관 홍보공사
- 아주대 초빙교수



**홍 중 표**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변호사



**성 기 준**

-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 (현)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김 희 진**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부원장
- (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서울 제6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이 은 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 재 봉**

- 법무부 대변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 특별심의위원장
- 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



**양 승 목**

- 한국언론학회 회장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배 영 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손 관 승**

- MBC 베를린 특파원, 보도특집 팀장
- iMBC 대표이사 사장
- (현)세한대 교수

서울 제7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김 성 수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8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김 수 일

- 인천지법 부장판사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중 세

- 동아일보 체육부장
- (현)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위원
- (현)한국체육언론인회 부회장



이 혁 주

- 조선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사
- (현)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박 종 렬

-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
- 가천의과대 경영대학원 원장
- (현)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이 중 탁

- 경향신문 논설위원 출판국장
- (현)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안 승 국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변호사



김 동 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언론학회 회장
- (현)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한 은 경

- 광고홍보학회 회장
- (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
- (현)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지 민

- SBS공익법률자문위원
- (현)변호사

부산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중재부장  
김홍일

- 창원지법 부장판사
- (현)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종명

- 부산일보 부국장, 논설주간, 이사 겸 주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오창호

- 지역언론연합회 언론과학연구 편집이사
- 커뮤니케이션이론 학술지 편집위원장
- (현)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지영

- (현)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 (현)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대구 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중재부장  
임상기

-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 (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송승부

- 대구MBC 제작부장
- 대구MBC 보도국장



이상식

-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 (현)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조창학

-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 (현)변호사



최현주

-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
- (현)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 주 증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이 창 한

- 광주고법 부장판사
- (현)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 동 수

- 광주일보 편집국장, 주필
-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김 종

-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
- 광주문화재단 이사



박 재 우

- 광주고검 항고심사위원
- 광주가정법원 기사조정위원
- (현)변호사



김 명 중

- 한국언론학회 이사
-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사장
- (현)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 전 증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양 태 경

-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 (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송 종 문

-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 중앙일보 상무이사
- (현)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정 교 순

- 대전고검 부장검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변호사



송 종 현

- 방송위원회 연구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현)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 은 희

- (현)충청남도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
- (현)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경 기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이 근 수**

- 대전지법 부장판사
- (현)수원지법 부장판사

**강 원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	---------



**중재부장  
이 주 현**

- 수원지법 판사
-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한 기 봉**

- 주간한국 국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관



**김 성 기**

- 강원일보 논설실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오 광 건**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현)단국대 교양학부 초빙  
교수



**이 관 열**

- 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
- KBS 연구위원
- (현)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이 정 화**

- 의정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김 효 정**

- 서울동부지검 검사
-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
- (현)변호사



**홍 문 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현)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안 정 민**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현)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충북증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증재부장  
방승만

-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정목

-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 연구회 회장
- 중앙인사위 인사정책 자문위원
- (현)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김영일

- 충청일보 정치, 사회부장
-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사장
-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김준희

- (현)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현)변호사



구철희

-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 (현)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북증재부

성명	주요경력
----	------



증재부장  
정재규

-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재금

- 전북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 주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진태호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변호사



김봉철

-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 (현)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현)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선남

- 호남언론학회 회장
-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 (현)원광대 행정언론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 남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박 민 수

- 부산지법 부장판사
- (현)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민 말 순

-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현)창원YMCA이사장



임 영 수

- 서울북부, 부산검찰청 검사
- (현)변호사



이 영 동

- 경남신문 논설실장,  
편집국장



이 완 수

- 헤럴드경제 국제부장
-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 (현)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제 주 중 재 부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허 명 욱

- 서울고법 판사
- (현)제주지법 부장판사



오 상 훈

- KBS제주 해설위원
-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 (현)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 원 홍

- 제주MBC 편성제작국장
- (현)제주대 강사
- (현)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강 문 원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판사
- (현)제주지검  
형사조정위원장
- (현)변호사



김 희 정

- (현)제주영상위원회 이사
- (현)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2. 설립근거 및 기능

###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3. 연혁

- 1981. 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안우만 위원장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 1981. 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사무국)
- 1984. 3. 2. 경남중재부 신설
- 1985. 4. 3. 임규운 위원장 취임
- 1985. 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 1986. 2.24. 정희택 위원장 취임
-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 1991. 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993. 3.31. 김두현 위원장 취임
-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1999. 4. 9. 박영식 위원장 취임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의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2001. 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04. 4. 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2005. 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2005. 3.31. 조준희 위원장 취임
2005.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9. 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2006. 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2007. 4.27. 위원회 새 CI 선포
2008. 4. 7. 권 성 위원장 취임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9. 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2010. 1.25.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2011. 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14. 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2014. 4.29. 박용상 위원장 취임

## 4. 기구

###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 라. 중재부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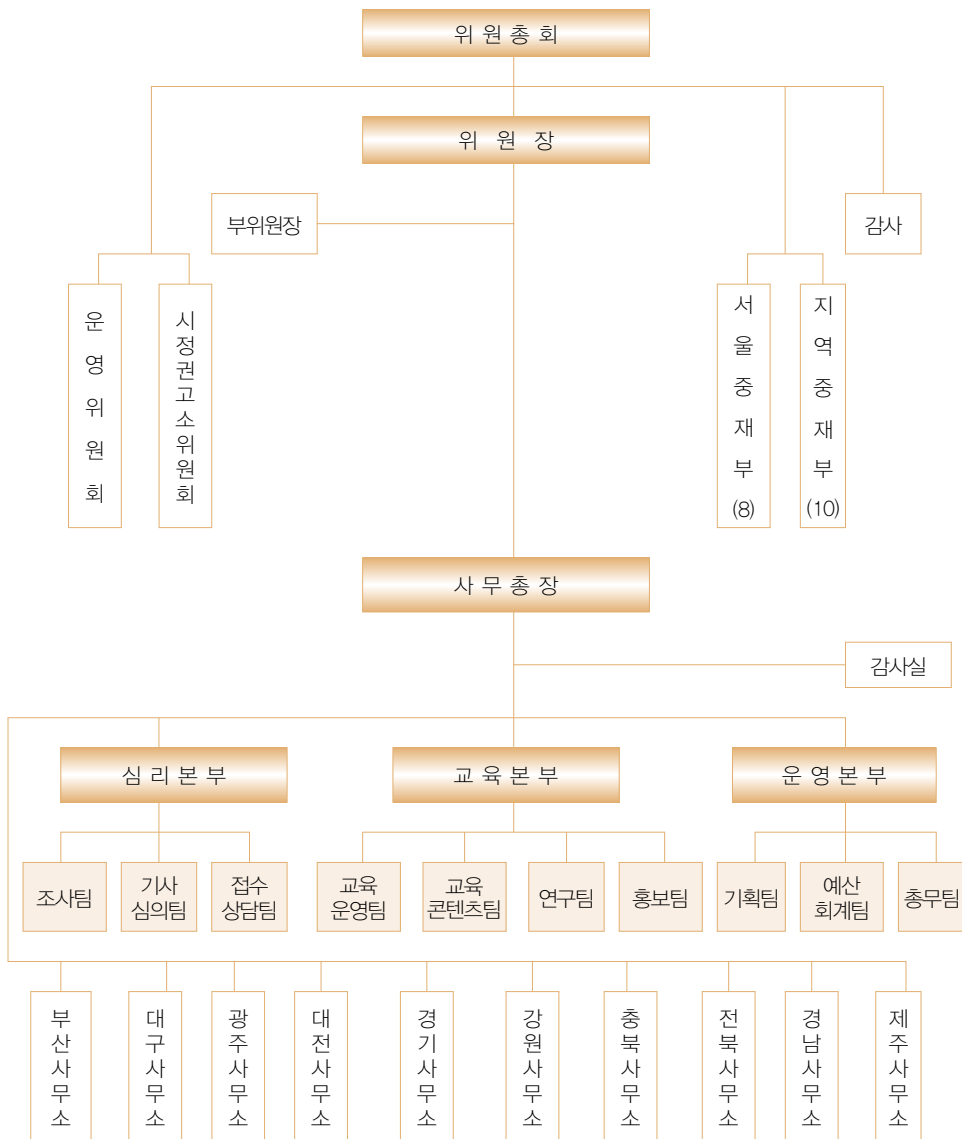
### 마. 사무처 기구 및 인원

- 3본부 10팀, 10지역사무소, 1실
- 정·현원표

(단위 : 명)

구 분	별 정 직	일 반 직	계
정 원	1	79	80
현 원	1	78	79

[ 위원회 기구표 ]



## 5. 2015년 예·결산

(단위 :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5,925	5,891	34
경상비	경상비	2,250	2,225	25
사업비	심의사업	1,525	1,522	3
	조사연구사업	338	324	14
	홍보 및 교육사업	397	381	16
	소계	2,260	2,227	33
합계		10,435	10,343	92

## 6. 2015년 국정감사 주요내용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질의의원
인터넷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li> </ul>	박창식 의원 윤재옥 의원 한선교 의원
조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필요</li> </ul>	배재정 의원
시정권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요원 증원 및 심의대상 언론사 확대 등 시정권고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li> <li>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li> </ul>	윤재옥 의원 배재정 의원 윤재옥 의원

## 7. 2015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발행부수
1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범호	2015. 3. 1.	500부
2	2014년도 연간보고서	2015. 3. 31.	300부
3	언론중재 범호	2015. 3. 30.	800부
4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5. 4. 30.	E-Book
5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반인 교육교재)	2015. 4. 30.	5,000부
6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여름호	2015. 6. 1.	500부
7	언론중재 여름호	2015. 6. 30.	800부
8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5. 6. 30.	990부
9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가을호	2015. 9. 1.	500부
10	언론중재 가을호	2015. 9. 30.	800부
11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반인 교육교재)	2015. 10. 30.	5,000부
12	언론중재아카데미 안내책자	2015. 10. 30.	1,000부
13	미디어와 인격권(학술지)	2015. 11. 30.	500부
14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겨울호	2015. 12. 1.	500부
15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언론인 교육교재)	2015. 12. 18.	2,000부
16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15. 12. 18.	200부
17	언론중재 겨울호	2015. 12. 30.	800부
18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일	12,000부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5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5 Annual Report

---

인쇄일 2016년 2월 25일  
발행일 2016년 2월 29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작 (주)계문사 02) 725-5216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